



조선대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사회대학] 군사학과 운영 내규 개정건

법사회대학 군사학과에서는 철저한 학사관리 및 학과발전을 위해 교수-학생간 토론회 결과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군사학과 운영 내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1. 개정 사유

- 가. 육군-대학 간 체결한 군사학발전 협력합의서 제6조 2항(대학 졸업인증제)을 현재 적용 중이며, 군사학과 운영 내규의 합법성 확보 필요
- 나. 대통령령 및 국방부령에 명시된 軍 가산복무지원금을 받는 者에 대한 관리, 예비 장교후보생 양성 목표 충족을 위해 학과 자체 합리적 체계 구축 필요
- 다. 대학 학칙 및 학사 규정 등을 기초로 군사학과 학사관리 체계 규정화
- 라. 사회 제도 및 문화 등의 변화에 따른 개정의 필요성 대두

2. 개정 절차

- 가. 규정 개정의 필요성 홍보 및 군사학과 전체 학생들의 의견 수렴(2025. 7.~2026. 1.)
- 나. 교수와 학생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토론회 5회 실시
- 다. 대토론회 결과를 기초로 학과 운영 내규 개정(안) 확정

3. 주요 내용: 붙임 파일 참조

4. 기대 효과

- 가. 육군협약 규정 준수 및 합법적, 규정에 의한 학과 운영
- 나. 졸업인증제 및 졸업자격 심의로 경쟁력 있는 우수 인력 양성

붙임 1. 군사학과 회의록 1부.

2. 군사학과 운영 내규 개정(안) 심의 의결서 1부.

3. 군사학과 운영 내규 개정(안) 신, 구문 대비표 1부.

4. 군사학과 운영 내규 개정(안) 1부. 끝.

담당	04/22	팀장	04/22	학장	04/22	행정부총장	04/23	총장	04/23
	전계성		김영미		김법현		강희숙		김춘성

협조자

시행 법사회대학-1050 (2026. 4. 23.) 접수

우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5길 74

전화 062-230-6761

/전송

/ jks@chosun.ac.kr

/ <https://www.chosun.ac.kr>

/ 공개

군사학과 운영내규

제 정 : 2004. 6. 29
일부 개정 : 2009. 3. 1
일부 개정 : 2017. 12. 1
일부 개정 : 2019. 12. 31
일부 개정 : 2026. 4.

조선대학교 군사학과

목 차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 적
- 제2조 용어의 정의
- 제3조 군사학과 학생의 신분
- 제4조 적용 대상 및 범위
- 제5조 군사학과와 업무

제 2 장 군사학과 학생의 생활 및 자세

- 제6조 책임과 의무
- 제7조 학년별 생활목표 및 구현 중점
- 제8조 학생 상호간의 관계
- 제9조 용모
- 제10조 복장
- 제11조 호칭과 언행
- 제12조 예절과 태도
- 제13조 보고
- 제14조 건의
- 제15조 신고
- 제16조 출석 및 소집
- 제17조 안전 및 건강관리

제 3 장 학사 관리

- 제18조 교육 목표 및 중점
- 제19조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 제20조 수업
- 제21조 성적 및 학점
- 제22조 전과, 휴학 등
- 제23조 졸업
- 제24조 졸업인증제

제 4 장 실병지휘

- 제25조 학년별 실병지휘 목표 및 구현 중점

제26조 병영체험훈련

제27조 군사실무 행정 교육

제 5 장 잠재역량계발

제28조 목적

제29조 특성화 교육 및 활동

제30조 군사 및 교양도서 탐독 등

제 6 장 학생활동 지도

제31조 개인 상담 및 지도

제32조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

제33조 군사학과 학생자치위원회 지휘 근무

제34조 종교활동

제35조 대외활동

제36조 국외여행 및 파견

제 7 장 포상 및 징계

제37조 목적

제38조 상·벌점 제도

제39조 상·벌 심의위원회

제40조 포상

제41조 징계

제 8 장 장학금

제42조 장학금

제 9 장 주요 행사 및 기타

제43조 군사학과의 날

제44조 졸업식(학위수여식)

제45조 입학식 및 승급식

제46조 개강식 및 종강식

제47조 CUMAS 행사

제48조 군사학과 체육대회

제49조 학생자치위원회 지휘권 교체

제50조 군사학과 M.T.

제51조 군사학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 칙

붙임#1, 각종 행사간 신고 요령[예]

#2, 졸업인증제 적용 요건

#3, 군사학과 졸업 인증 / 졸업자격 심의서[양식]

#4, 군사학과 장학생 선발 방침 / 절차

#5, 학생자치위원회 간부학생 인수·인계서 [양식]

#6, 학과 지정 우선 수강과목(=선수 과목) 목록

#7, 해외 여행계획서 [양식]

#8, 진술서(경위서) [양식]

군사학과 학생의 생활신조

나는 대한민국 국방을 선도할 자랑스러운 군사학과 학생으로서
앞으로 극한 시련과 풍파가 닥쳐올지라도 장차 장교로서의
명예와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역량과 자질 개발에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군사학과 학생의 다짐

하나. 나는 육군 협약대학 장교 후보생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한다.

하나. 나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하나. 나는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구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나는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 역량과 자질을 겸비한다.

하나. 나는 장교 후보생으로서 품위 유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명예와 신의를 굳게 지킨다.

하나. 나는 품위 있는 언행과 솔선수범을 생활화 한다.

군사학과 학생의 5대 준수사항

1. 학칙 및 학생자치위원회의 제반 규정 준수
2. 정직하고 정확한 보고 습성화
3. 명예, 긍지, 자부심 생활화
4. 상호 인권 존중과 배려 습성화
5. 어학, 전쟁사, 리더십 등 독서 생활화

군사학과 학생의 5대 금기사항

1. 구타 및 가혹 행위, 집합 행위 일체 근절
2. 성추행 및 성폭행 등 성관련 범죄 행위 근절
3.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 대민 물의사고 금지
4. 군사학과생으로서 불명예스러운 행위 금지
5. 불법 사이트 가입 등 도박행위 근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본 규정(군사학과 운영 내규)은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대통령령 제 28423호) 및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948호)에 의거 육군 본부와 본 대학교간 체결한 “군사학 발전 협력 합의서” 이행, 대학 규정(학칙 및 학사규정 등)을 준수하는 가운데 군에서 요구하는 미래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안보전문가 및 미래 전장을 주도할 우수한 군사전문가 육성이라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학과와 학생으로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조선대학교 군사학과는 육군 본부와 본 대학교간 체결한 “군사학 발전 협력 합의서”(2003년)에 의하여 2004년에 개설된 특성화 학과이다.
2. 군사학과 학생은 입학 당시(수시, 정시) 또는 재학 중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대통령령 제28423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법 제명 변경 및 일부 개정, 2017.11.14.)(국방부령 제948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법제명 변경 및 일부 개정, 2018.1.22.)과 일반 학생(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 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 취소 학생)으로 구분한다.
3. “군 가산복무지원금”이란 「군 인사법」 제7조 제4항 및 제62조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 군사학과 학생의 신분

1. 군사학과 학생 중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대학 졸업시까지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대통령령 제28423호) 제13조(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취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군 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행위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
 - 다.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 라. 제10조(전학 등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
 - 마. 제11조(휴학 등) 제1항에 따른 휴학 기간 또는 입영 연기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 바.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2. 군사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은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재학 중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학군)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학사사관(예비)) 후보생 선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 군사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은 최단시간 내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선발) 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대상 및 범위

1. 본 규정(군사학과 운영 내규)은 조선대학교 군사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적용한다.
2. 본 규정(군사학과 운영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대통령령 제28423호, 법 제명 변경 및 일부 개정, 2017.11.14),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948호, 법 제명 변경 및 일부 개정, 2018.1.22.), 학생 군사교육 관련 법령(학군사관 후보생에 한함.), 조선대학교 규정, 군사학 발전 협력 합의서에 따른다.
3. 본 내규(군사학과 운영 내규)는 제4조 제2항의 하위 규정이다.
4. 본 내규(군사학과 운영 내규)는 군사학과 학생에게 대학 생활 및 활동의 기준을 제시하고, 생활(훈육) 지도와 잠재역량개발의 근거를 제공한다.
5. 군사학과 학생이면서 학군사관 후보생은 학생군사교육 관련 법령,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조선대학교 규정, 군사학 발전 협력합의서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5조 군사학과의 업무

군사학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사학과 학생 선발 업무 : 입시요강 작성, 입시 상담 및 홍보 활동 등
2. 군사학과 학생 교육 및 훈육 지도(교육과정 편성 포함)
3. 군사학과 학생 진로 탐색 및 지도(병과 선택, 장기복무 등), 졸업 후 사후관리
4. 군사학 발전 협력 합의서(2017. 05. 22, 2차 개정) 이행
 - 가. 학과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
 - 나. 대학 졸업인증제 적용
 - 다. 동·하계 군 부대 병영체험 훈련(1, 2학년)
 - 라. 예비 장교후보생으로서 자질과 역량 배양
 - 마. 군사학과 교수 선발 및 운영 등

제 2 장 군사학과 학생의 생활 및 자세

제6조 책임과 의무

1. 군사학과 학생은 전문 직업군인과 군사전문가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함양하고, 역량을 계발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을 정립해야 한다.
2. 군사학과 학생은 대학생활간 전문 직업군인과 군사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구비하고, 군사학과 학생의 생활신조 및 다짐, 5대 준수사항 및 금기사항을 적극 준수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3. 군사학과 학생은 자신을 경영하고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성장·발전 가능한 올바르게 좋은 습관을 갖추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4. 군사학과 학생은 군사학과 운영 내규를 숙지하여 이를 준수하고 실천해야 한다.

제7조 학년별 생활 목표 및 구현 중점

군사학과 학생은 군사학과 학생의 생활신조 및 다짐의 정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학년별 생활목표를 실천한다.

구 분	생활 목표 / 구현 중점
공 통	•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대통령령) 및 시행규칙(국방부령) 준수 • 대학 학칙 및 학사 규정, 군사학과 운영내규 준수 • 군사학 발전 협력 합의서 이행 • 올바른 인성 및 가치관 정립 • 졸업인증제 준수 및 이행
1학년	• 전공 기초역량 구비 • 대학생활 적응, 단체정신 함양, 체력단련, 장교로서 기초적인 자질 개발
2학년	• 전공 심화역량 구비 • 직업 군인과 군사전문가에게 요구되는 기본 자질 및 정신력 배양(심층적 연구)
3학년	• 전공 응용역량 구비 • 직업 군인과 군사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역량 및 능력 개발(전문성 구비)
4학년	• 창의적 적용 · 융합역량 구비 • 전투 지휘자 · 부대 관리자 · 교육 훈련자로서 요구되는 책임감과 리더십 배양

제8조 학생 상호 간의 관계

1. 군사학과 학생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배려하는 동반자적 선·후배 관계이다.
2. 상급 학생은 하급 학생에게 어떠한 경우에도(시간, 장소, 상황 등 불문) 명령, 지시, 소집(집합 등), 교육, 사적 제재 및 인권 침해 행위(폭행, 폭언, 가혹행위, 인격모독 행위, 비하 발언, 핸드폰의 문자(카톡 포함) 내용 불법 검색 등)를 일체 금지한다. 단, 학습 관리, 학교(과)행사, 단체 활동 등에 있어서 군사학과장 또는 지도교수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학생에 한하여 그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만 허용한다.
3. 상급 학생은 하급 학생에게 학사 관리, 체력단련, 잠재역량 등 역량 개발 등에 관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정당한 방법으로 전수하되, 항상 솔선수범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해야 한다.
4. 하급 학생은 상급 학생을 존중하고 예우하며, 상급 학생의 정당한 조언과 충고 등에 대해서는 올바른 자세로 선도를 받아야 한다.
5. 상·하급생 및 동기생간에 규정 위반, 기강 문란 등의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군사학과장 또는 해당 학년 지도교수에게 보고하여 교수의 지도와 조치를 받아야 한다.
6. 학생 상호(상·하급생, 동기생)간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 학과 생활과 연계시켜 간섭·침해하거나 학과 생활 및 활동과 무관한 사생활 등에 대해 학교 내·외를 불문하고 일체의 간섭·침해 행위(언어, 행동 등)를 금지한다.

제9조 용 모

1. 군사학과 학생은 항상 개인위생에 있어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군사학과 남학생은 매일 면도를 실시하며, 두발은 단정하게 손질(스포츠형)하여 예비 장교후보생으로서의 외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군사학과 여학생은 두발을 단정하게 손질한다(커트 형 두발 정리 가능). 단, 긴 머리카락을 유지하는 학생은 군사학과 제복 착용 시 머리카락을 뒤에서 묶고 머리카락이 풀리지 않도록 보호망을 착용한다.
4. 군사학과 학생은 학기 중에 유색으로의 모발 염색 및 퍼머 행위 등을 금지한다.
5.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유색의 모발은 원래의 모발 형태로 유지가 가능하다. 단, 외관상 확연하게 드러나는 짙은 색의 유색 모발은 지도교수와 상담 실시 후 가능한 한 검정색으로 염색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10조 복 장

1. 군사학과 학생은 항상 복장을 단정히 하여 예비 장교후보생으로서 요구되는 외적 품위를 함양하고 유지해야 한다.
2. 군사학과 학생은 학기 중 대학 내에서 평상시 착용하는 복장(군사학과 제복 제외)은 군사학과 학생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정한 복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대학 내에서 반바지나 치마(여학생에 한 함.) 등 착용이 가능하나 타인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 등을 주거나 예비 장교후보생으로서 품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복장 착용(숏 팬츠, 미니스커트, 슬리퍼 포함)은 지양한다.
3. 군사학과 학생의 제복, 체육복 등 전체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단체 복장은 경제성, 효율성, 다용도로 활용의 용이성 등 고려하여 학생자치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군사학과장이 결정한다.
4. 군사학과 제복은 주 2회 군사학과 학생 전원이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기별 학과 일정표(강의 시간표 등)를 고려하여 별도로 통제한다. 단, 행사, 홍보, 견학, 강연회 참석 등 단체 활동으로 인한 복장 통일이 필요할 경우에는 군사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적으로 착용하거나 제복 착용 일정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군사학과 제복을 착용하였을 경우, 복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가. 제복의 각종 부착물(견장, 단추 등) 상태를 확인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수선, 정비 등)한 다음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나. 상의(외투 포함)에 부착되어 있는 단추는 모두 잠근다.
 - 다. 외투 착용 시 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허리 벨트를 완전하게 착용하여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여야 한다.
 - 라. 베레모는 실외 활동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실내에서는 벗어서 보관(휴대)한다.
6. 체육활동을 할 경우 운동복(운동모 포함)을 착용하고, 병영체험 훈련 기간 중에는 해당 부대의 통제 규정(지침)에 따른다.

7. 군사학과 학생은 제복을 착용할 경우에는 장식용 품목(귀걸이, 팔찌, 목걸이 등)의 착용을 금지하며,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비 장교후보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장신용 품목을 착용할 수 있다.
8. 군사학과 학생의 학과 백(휴대용 박스형 가방) 휴대 지침은 아래와 같다.
 - 가. 군사학과 제복을 착용하였을 경우, 외부 활동 간 필요(책, 필요 품목 보관 등)시만 휴대(빈 가방 휴대 지양)한다.
 - 나. 수업 후 휴식 등의 사유로 실내에서 활동 간 불필요하게 휴대함을 지양한다.
 - 다. 안보현장 견학 등 외부 활동 간 학과 백 휴대를 지양한다.

제11조 호칭과 언행

1. 하급 학생은 상급 학생을 " OO선배님 " 이라고 호칭하고, 상급 학생은 하급 학생을 " OO후배님 " 이라고 호칭한다.
2. 군사학과 학생은 표준말을 사용해야 한다.
3. 하급 학생은 상급 학생에게 경어를 사용한다.
4. 상급 학생은 하급 학생을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과 언어를 사용한다.
5. 폭언 및 욕설, 인격 모독(비하 발언 포함) 등을 줄 수 있는 언어, 각종 저속어나 은어 등의 사용을 금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지한다.
6. 동·하계 병영체험 훈련 등 군 부대에 입소하여 훈련을 하는 기간 중에는 현역 장병과 군사학과 학생 상호간 경어를 사용한다.

제12조 예절과 태도

1. 상급 학생이 하급 학생에게 또는 동급생간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 및 가혹행위, 인격 모독 행위(비하 발언 포함), 성 관련 범죄 행위(언어 및 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등 법적 책임이 동반되는 언행을 일체 금지한다.
2. 학생 상호간 타인의 사생활을 반드시 존중하여야 하며, 시간·장소·내용(상황)을 불문하고 일체의 간섭·규제 등의 언행을 금지한다.
3. 군사학과 제복을 착용했을 경우, 이성교제 중인 남·여 학생간 공공장소(실내·외 불문) 등에서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칠 정도의 과도한 애정 표현(신체 접촉 등) 관련 언행을 자제하고 법적·도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4. 군사학과 제복을 착용했을 경우, 항상 단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절도 있는 동작을 취하며, 의젓하고 당당한 보행 자세와 예의 바른 행동을 유지해야 한다.
5. 군사학과 제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보행 시 상·하의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취식하는 등 품위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6. 군사학과 학생은 언제, 어디에서든 상·하급생간 서로 만나거나 자리를 함께하였을 경우에는 상호 인사(목례, 거수경례 등)와 격려의 인사말을 나누며, 교수에게는 항상 공손한 태도와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7. 군사학과 학생이 교수에게, 하급생이 상급 학생에게 표시하는 경례 예절은 다음과 같다.
 - 가. 단체 활동(이동)시에는 선임자(인솔자)만 인사한다.(실내·외 동일)
 - 나. 이동 중이거나 정지한 상태에서 인사(거수경례, 목례)는 상대방에 대해 식별이 가능한 거리(6보 내외)에서 상대방간 서로 마주칠 경우에만 실시한다. 기타의 경우에는 본인인 당시의 주변 상황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행동(예의 표시 또는 생략 가능)한다.
 - 다. 거수경례 시 구호는 인사를 받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정도의 목소리로 한다.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의 과도하게 큰 목소리 사용 지양)
 - 라. 실내·외에서의 경례 자세는 다음과 같다.
 - 1) 실내 : 거수경례 또는 목례(“충성” 구호 생략 가능)
 - 2) 실외 : 거수 경례(원칙), 양손에 물건을 휴대하였을 경우 목례 가능
 - 마. 인사(경례)를 받는 사람은 인사를 하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예의를 표시한다.(공손한 태도와 자세를 유지한 가운데 답례 실시)

제13조 보고

1. 교수의 지도와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① 개인 신상의 변동, ② 학업 및 잠재역량 계발, ③ 학내·외 활동 등에 관한 사항, ④ 기타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적시적절하게 학과장 및 해당 학년 지도교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보고는 6하 원칙에 의거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시하되(신속성 우선 준수), 임의 판단 또는 지연보고로 인한 조치와 지도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① 최초 보고(최초 사건·상황 인지 후 5분 이내), ② 중간보고(최초보고 이후 변화사항 등), ③ 최종 보고(사건·상황 종료 후 모든 사항을 논리적으로 정리)를 한다.
3. 학생회, 동아리, 체육·문화 활동, 전적지 답사, 학년별 전체 단결활동 행사(단체 회식 포함) 등의 모든 단체 활동은 사전에 활동(행사) 계획을 학과장 및 해당 학년 지도교수에게 보고하여 승인 후에 실시하고, 그 활동 결과를 해당 학년 지도교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4. 군사학과 학생은 성추행 및 성폭행 등 성(性) 관련 사고 발생 또는 인지 즉시 해당 학과장 및 학년 지도교수에게 보고하고, 대학 양성평등센터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신고하여야 하며, 성(性) 관련 사고에 대한 모든 후속조치는 대학 양성평등센터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5. 군사학과 학생은 기강 문란행위와 부당행위 등에 대해서는 발생 또는 인지 즉시 보고해야 하며, 관련자는 학과장 및 해당 학년 지도교수에게 해당 사유 발생 후 2일 이내에 사유서(경위서)를 보고(제출)해야 한다.
6. 군사학과 학생으로서 보고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등 포함) 제38조, 제39조, 제41조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제14조 건 의

1. 군사학과 학생은 정당하고 발전적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교수 또는 학생자치위원회에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2. 군사학과 학생은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교수 또는 학생 자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고, 허가되지 않은 집단 및 연명 상신을 금지한다.
3. 군사학과 학생(상·하급생간, 동기생간)은 의견이 정당하고 유익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하며, 의견을 접수 받은 학생은 학생자치위원회 간부학생에게 통보하거나 해당 학년 지도교수에게 보고 및 건의한다.

제15조 신 고

1. 신고는 명령에 의한 인사 상의 변동사실 등을 소속 대학총장(대학장, 학과장) 또는 지휘관에게 보고함을 말한다.
2. 군사학과 학생으로서의 신고 시기 및 주관자는 다음과 같다.
 - 가. 동·하계 병영체험 훈련 입·퇴소 : 군사학과장, 군부대 지휘관
 - 나. 학생 자치위원회 지휘권 교체, 승급 : 군사학과장
3. 각종 행사 간 신고 요령 및 절차는 붙임#1을 참고한다.

제16조 출석 및 소집

1. 군사학과 학생은 학기 또는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 중 학과에서 주관하거나 군사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집, 교육(졸업인증제 목표 미달성자/해당 학년 -학기 잠재역량 개발 목표 미달성자에 대한 집체교육 및 보충교육 포함), 행사, 단체 활동과 기타 군사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집·교육·심의 등에 출석(참석)해야 하며, 출석(참석)이 불가능한 학생은 48시간 전에 결석계(불참 사유서)를 제출하고 해당 학년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건·상황 발생과 동시 최단 시간 내 구두 보고 후 사건·상황 종료 후 1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유계 결석은 대학 학사규정 제47조(공결처리 기간)에 해당하는 사항과 공결 처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사항(예; 병원 진료, 친·인척의 경조사, 대내·외 행사 참석, 법원(경찰, 검찰)의 소환, 해당 학년 지도교수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경우)이며, 이 경우에도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1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무계 결석은 대학 학사규정 제47조(공결처리 기간)에 해당하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전 승인 없이 결석한 것을 말하며, 무단결석 시에는 1주일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제41조에 의거 벌점을 부여한다.
4. 군사학과 학생은 비상소집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학년별 비상소집 연락망을 편성·운용한다. 만일, 주소나 연락처(전화번호 포함)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대학에서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상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고, 해당 학년 중대장 학생에게 통보하여 변경된 연락처로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학생자치위원회 비상 연락망 수정, 행정실 및 지도교수 통보 등)

제17조 안전 및 건강 관리

1. 군사학과 학생은 항상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여야 하며, 신체의 손상과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2. 모든 행동(교육, 운동, 동아리 활동 등) 실시 전 현장 책임자에 의해 위험예지교육(훈련)을 반드시 실시하고, 특히 운동경기 중 지나친 경쟁 심리(승리 욕구)로 인한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도한 신체 접촉 행위 등은 피하여야 한다.
3. 학교 내·외에서의 활동 중 부상과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해당 학년 지도교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4. 군사학과의 상급 학생은 하급 학생의 숙소에 대한 무단 방문 행위를 금지하며, 성 관련 범죄 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언어 및 행동을 금지한다.
5. 군사학과 학생의 자가 차량 운전은 안전 차원의 선도적 입장에서 자제를 권장하며, 자가 차량 운전 중 발생 가능한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음주운전, 사망사고, 중앙선 침범 등) 관련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따라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그 결과를 학군단에 통보한다.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6.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학군단 통제 하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체력검정 및 신체검사 결과, 임관종합평가 결과 등 개인 신상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학년 지도교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학사 관리

제18조 교육 목표 및 중점

1. 교육 목표
21세기와 4차 산업혁명의 급변하는 변화와 혁신 속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미래의 국가안보의 일익을 담당하고, 통일한국을 이끌어 갈 우수한 직업 군인 및 군사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구비한 예비 장교후보생을 육성하는데 있다.
2. 교육 중점
 - 가. 직업군인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내는 군사학 전문지식과 체력 습득
 - 나. 군의 정보화·과학화 추세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 습득
 - 다.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어학 능력 및 국제화 마인드 제고
 - 라. 장차 군의 고급장교로서의 도덕적 자질 및 인성 함양

제19조 교육 과정 편성 및 이수

1. 육군의 군사학 학위 제정 조치에 의거하여 군사학과를 설치 운영하고 졸업과 동시에 군사학사 학위를 부여한다.

2. 대학의 학칙 및 학사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방침을 준수하며, 군사학 발전 협력합의서(육군본부와 대학 간 체결) 및 육군 학사운영평가 지침서를 고려하고 군사학과 교육목표 및 중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군사학과 특성에 부합된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3. 개편된 교육과정은 다음 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확정된 교육과정은 해당 학년도 개시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정 및 변경할 수 없다.
4. 교육과정은 대학 학사규정에 따라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며, 졸업 이수 최소 학점은 해당 입학년도 최소 졸업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5. 군사학과의 교육과정 편성 및 군사학과 학생의 졸업 이수 최소학점은 130학점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에서 제시된 내용과 같다.

가. 교육과정 편성

구 분	교양과정	전공과정	일반선택 과정
이수과정	① 교양필수 ② 교양선택	① 전공필수 ② 전공선택	① 자유선택 교과목 ② 복수전공
비 고	▶ 전원 해당		① 희망 학생 ② 복수전공 지원 학생

나. 졸업이수 최소학점

1)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 (학사 규정 별표#2 “자”항 기준)

구 분	계	교양 과정	전공 과정						
			단일 전공자			복수 전공자			
			소계	주 전공	잔 여	소계	주전공	복수전공	잔 여
졸업 이수 최소학점	130	30	100	60	40	100	42	36	22

- 다. 교양과목 이수과정은 교양필수(학과지정 필수 포함)와 교양선택으로 구분하며, 교양 교육 과정은 세부영역으로 함께형 인성교양, 기초교양(기본교육, 기초교육), 핵심 교양, 일반교양으로 구분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 라. 전공과목 이수과정은 전공 필수과목과 전공 선택과목으로 구분하며, 전공 필수 과목은 24학점 이내로 편성한다.
- 마. 전공선택 과목 중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과에서 우선 수강과목(=선수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은 타 과목에 우선하여 선수과목부터 이수하여야 한다.

(대학 학사 규정 제13조 제1항)

1) 학과 지정 우선수강(=선수) 과목 목록 : 붙임# 6 참조

2) 복수전공자 및 미수강자는 해당 학년 지도교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바. 복수전공은 2학년부터 가능하며, 본인이 복수전공을 희망하는 학과에 개별적으로 지원하여 합격된 자에 한하여 해당학과 전공과목 36학점(필수, 선택 구분 없음)을 이수해야 하며, 군사학 전공과목은 4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사. 복수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은 복수전공을 지원하기 전에 학과장과 지도교수의 심층 면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 대학(학과) 생활, 학군단 후보생, 성적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 고려 상담 실시

6. 전공 교육과정은 군사학과 교육과정 운영위원회(전임교원,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실무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의 심의를 거쳐 학과장이 편성하며, 대학 총장의 승인을 득한다.

제20조 수업

1. 수강신청은 매 학기 개시 전 정해진 기간에 해당 학기 개설교과목을 학생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기준학점은 다음과 같다.(학사규정 제28조)
가. 2020학년도 이후 입학생 - 학기별 수강신청 기준 학점(일반대학)

구 분	1 ~ 3학년	4학년	
	1·2학기 공통	1학기	2학기
수강 신청 기준학점	17 ~ 19학점	12 ~ 19학점	6 ~ 19학점

※ “신입생 세미나” 교과목의 학점 : 학기별 수강신청 제한 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2. 수강은 교양과목·전공과목을 우선으로 하되, 하급 학년의 미이수 필수과목부터 신청하여야 한다.(학사규정 제29조)
3.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 신청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준 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일반 선택과목, 전공 선택과목, 전공필수과목 순으로 삭제한다.(학사규정 제30조)
4. 수강 신청을 정정 및 취소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하고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수강신청 정정 및 취소기간의 만료로 확정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학사규정 제32조)
5. 재수강은 동일 과목(과목명과 과목번호가 동일한 경우)과 대체 과목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성적등급이 B⁰이하인 경우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수강한 교과목의 이전 성적과 학점은 무효로 하며 최종적으로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을 인정하되, 재수강으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A학점까지만 인정한다.
(학사규정 제35조)

제21조 성적 및 학점

1. 교과목의 성적은 담당교수가 학생의 출석, 과제와 시험, 성적 등으로 종합 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및 이에 준하는 특수 교과목의 성적은 별도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학사규정 제62조 제2항)
2. F학점을 취득한 교과목 중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에 한하여 4학년 재학생은 취득성적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성적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취득성적 포기신청을 하여야 한다.(학사규정 제69조)
3. 학점은 대학 학칙 제40조(학점 인정)의 규정에 따라 D⁰ 등급 이상과 P를 취득한 과목에 대하여 이수학점 과목으로 인정한다.(학칙 제40조 제1항)
4. 성적 확정 및 관리 절차는 아래와 같다.(학사규정 제66조, 제67조)
가.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말 시험 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성적의 전산입력을 완료한다.

- 나. 교무처장은 성적열람과 정정기간을 거쳐 성적을 확정한다.
- 다. 교과목 담당교수(비전임 및 퇴직교원 포함)는 성적 확정 이후 성적평가표(보관용)를 출력하여 확인한 후 출석부, 성적관리부(조기취업자의 경우 수업 대체 과제물 및 재직증명서 포함)와 함께 소속 대학 또는 소속 학부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성적평가표, 출석부, 성적관리부(조기취업자의 경우 수업대체 과제물 및 재직증명서 포함)는 소속대학 또는 소속 학부 교학팀에서 10년간 보관한다.
- 라. 확정된 성적은 임의로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성적표에 오기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교과목 담당교수는 다음 학기 개시 30일전까지 성적정정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속대학장을 거쳐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제22조 전과, 휴학 등

1. 전 과

- 가. 군사학과 학생 중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전과(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학 학칙 제21조 제1항, 학사규정 제76조 제1항)
- 나. 군사학과 학생 중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일반학생으로 재학 중인 학생이 전과(부)를 희망하는 경우, 학칙 제21조(전과(부)) 제1항, 학사 규정 제76조(전과(부)의 자격) 제1항에 의거 전과(부) 할 수 있다.

2. 휴학 및 복학

- 가. 군사학과 학생 중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한하여 육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하거나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1조(휴학 등))
- 1) 군 병원에서의 신체검사에 따라 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 2)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본인의 경제활동 외에는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국외 유학, 국외 연수 또는 국외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 나. “가” 항에 의거 휴학 또는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 따른 학교별 제한 연령 내에 졸업하거나 수료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 다. 학생은 매학기 개시 전 정해진 기간에 휴학할 수 있다. 다만, 등록 후 수업 일수의 4분의 3 이내에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등교할 수 없는 학생은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학칙 제21조)
- 라. 휴학은 재학 기간 중 3회에 한정하고, 1회의 휴학 기간은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학칙 제28조 제1항)
- 마.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만료 전에 휴학사유가 소멸된 경우 재학기간 중 3회에 한정하여 학기제 복학(해당 학기 전 복학)할 수 있다.(학칙 제30조)

3. 자퇴

- 가.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보증인 연서의 자퇴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학칙 제31조)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 받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5조)
 - 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 규정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된 사람
 - 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 규정 제14조에 따라 선발이 취소된 사람
 - 다.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 의무복무 가산 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제23조 졸 업

1.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은 대학 학사 규정에 따른다.(학칙 제43조 제1항)
2. 수료 인정에 필요한 학년과 학점은 다음과 같다.(학칙 제43조 제3항)

졸업 학점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30학점	34학점	68학점	102학점	130학점

3. 졸업 및 수료 사정은 군사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사정하고 총장이 확정한다.(학사규정 제73조 제1항부터 제3항)
- 가. 졸업 및 수료사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졸업사정 기준 (동 규정 제2항)	수료사정 기준 (동 규정 제3항)
1. 졸업에 필요한 학점 취득 과 졸업 작품, 졸업 특별시험 등의 합격 여부 2. 수업연한의 충족여부나 조기졸업 여부 3.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에 의하여 정해진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 중 본 대학교에서 85학점 이상 취득 여부	1. 복수전공, 부전공, 특별전공, 교직과정 이수 여부와 전공학부(과)에서 정한 졸업 작품, 졸업 특별시험 등의 합격 여부

제24조 졸업 인증제

1. 군사학과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5조(결격 사유) 및 제13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취소)에 의거하여 군사학과 학생을 지도 및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육군본부와 대학 간에 체결한 군사학 발전 협력합의서 제10조(군사학과 운영 및 교육제도 평가)에 의해 장교 역량 및 자질 분야에 대해 대학 졸업 인증제를 적용하고 그 결과를 육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군사학과 학생 중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학생은 예외로 한다.
2. 군사학과 학생 중 입학 또는 재학 중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대통령령 제28423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 개정**, 2017. 11. 14)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948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 개정**, 2018. 1. 22.)에 의거하여 4년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는 대학생으로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5조(결격 사유) 및 제13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취소)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장교 역량 및 자질을 구비하기 위하여 인성 함양 및 품위 유지, 성적 관리 등 자기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군사학과 학생은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대통령령 제28423호) 제5조(결격 사유) 및 제13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취소), 대학 학칙 제51조(졸업과 학위) 제2항에 의거 심의절차를 거쳐 졸업 여부를 결정한다.

가. 학기별 **성적이 70/100** 미만인 자 (**공통**)

나. 군사학과에서 요구하는 졸업인증제 요건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공통**)

다. **자질**(인성 및 품성 분야) : 대학 4년간 누적 별점 40점 이상 또는 군사학과장 명의의 경고장을 총 3회 이상 받은 자 (**공통**)

※ 군사학과 **운영내규(2019. 12. 31. 일부 개정)** 제7장(포상 및 징계) 적용

라. **장교 임관 불(不)희망자는 학과에서 통제하는 졸업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졸업 시험 과목	합격 기준
▶ 전공필수 : 3개 과목 - 무기체계론, 군대윤리, 한국군 리더십	▶ 과목별 70/100 이상

4. 군사학과 학생은 교양과목 및 특별강좌 수강, 자율학습을 통하여 직업 군인 및 안보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인 어학(영어 등), 정보화, 체력, 무도 등 졸업 인증제 적용 항목에 대해서는 졸업사정 심의 전까지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다만, 군에서 권장(복무 연장 및 장기복무자 선발, 진급 등 점수 반영)하고 있는 **한국어능력시험, 청소년상담사/지도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드론 조종사 1종(급)** 등 국가(공인)자격 취득을 장려한다.

가. 어학(영어 등) 분야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교양 필수과목 또는 특별강좌 수강, 자율 학습 등을 통하여 1~2학년 기간 중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또한, 매 학기별 모의시험 또는 본시험에 응시하여 그 결과를 매학기 말 해당 학년 지도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정보화 분야는 전산 특별강좌 수강 및 자율학습 등을 통하여 1~2학년 기간 중 집중적으로 학습하며, 매학기별 본시험에 응시하여 그 결과를 매학기 말 해당 학년 지도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개 분야 이상 자격증 취득 목표 달성자 제외)

다. 무도 분야는 1개 분야라도 단증을 취득하지 않은 학생 중 태권도는 전공선택 과목 수강 또는 개인 수련을 통하여 1~2학년 기간 중 집중 단련한다.

라. 체력분야는 개인이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아래 통제지침을 적용하여 제31조 제2항의 학년별 요구 수준을 달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1) 월 1회 이상 학년별 지도교수에 의해 체력측정(평가)을 실시하며, 체력측정 결과 불합격자는 목표 달성 시까지 별도 계획(통제)에 의거 저조자 보충교육 참석 및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2) 체력측정 결과는 체력단련 학점(성적)에 반영하며, 정기 체력측정 결과 학년별 목표 수준을 3회 이상 도달하지 못한 학생 또는 별도로 실시하는 수준 저조자 보충교육에 3회 이상 무단으로 참석하지 아니한 학생은 **체력단련** 성적을 "F" 처리하며, 학과에서 실시하는 장학생 선발 시 고려한다.

3) 학년별 요구 수준을 달성한 학생은 다음 달 정기체력 측정 실시 전까지 수준 유지를 위해 개인적으로 체력단련 여건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월 1회 실시하는 체력 측정 간 체력검정 등급표에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월 1회 실시하는 정기 측정에는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마. 기타 군에서 권장하는 분야(한국사, 상담사, 한국어, 드론 조종사 1종(급) 등)는

졸업 인증제 적용 분야에 대한 목표를 우선 달성한 이후 개인별로 지속적으로 학습하여 관련 자격 취득을 권장한다. (군 생활 중 장기복무자/진급선발 등 필수 평가요소 반영)

5. 군사학과의 졸업인증제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 방법 및 절차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졸업인증제 적용 항목, 요구 수준, 방법 및 절차

1) 장교 임관 희망자

구분	역량 분야	자질 분야									
적용 항목	①잠재역량 : 어학, 무도, 전산 등 3개 분야 이상 ②체력 : 육군 기준 1급 이상	인성 및 품성									
요구 수준	1. 상기, 잠재역량, 체력 분야 모두 조건 충족 가. 기준(기본) 1) 어학 : 토익 기준, 700점 이상 (최저 535점 이상) 2) 무도 : 태권도, 유도, 검도 1단 이상 3) 정보화, 한국사 등 1개 이상 * 해당 분야별 육군에서 인정하는 국가공인 자격만 인정 4) 체력 : 육군 체력검정 기준 적용, 3개 종목별(3Km달리기, 팔굽혀 펴기, 윗몸일으키기), 각각 1급 이상 * 졸업 인증제 적용 항목(어학, 체력, 무도, 정보화 등)별 합·불제 적용 2. 어학 분야는 토익 700점 미만 자에 대해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학과 졸업 사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졸업 여부 결정 <table border="1"> <tr> <td>구분</td><td>토익 535-699점 취득 자</td><td>토익 535점 미만자</td></tr> <tr> <td>기본</td><td colspan="2">무도 1단 이상 + 정보화 등 1개</td></tr> <tr> <td>추가 조건</td><td>군 요구(가산점) 자격증 분야 1개 이상 추가 취득</td><td>군 요구(가산점) 자격증 분야 2개 이상 추가 취득</td></tr> </table> * 매년, 육군 통제 지침 확인 후 학생들에게 변경사항 공지 3. 기타 세부내용 : 졸업 인증제 적용 요건 (붙임#2) 참조 * 졸업인증제 적용 조건 중 500점 미 도달자, 기타 자격증 보유자는 학과 졸업 심의위원회 별도 심의 후 졸업 여부 결정	구분	토익 535-699점 취득 자	토익 535점 미만자	기본	무도 1단 이상 + 정보화 등 1개		추가 조건	군 요구(가산점) 자격증 분야 1개 이상 추가 취득	군 요구(가산점) 자격증 분야 2개 이상 추가 취득	1. 아래의 2가지 조건 ("가", "나" 항) 중 하나 또는 2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가. 대학 4년간, 누적 별점을 40점 이상 받은 학생 나. 대학 4년간, 학과장 명의의 경고장을 3회 이상 받은 학생
구분	토익 535-699점 취득 자	토익 535점 미만자									
기본	무도 1단 이상 + 정보화 등 1개										
추가 조건	군 요구(가산점) 자격증 분야 1개 이상 추가 취득	군 요구(가산점) 자격증 분야 2개 이상 추가 취득									

2) 장교 임관 불(不) 희망자

(재학 중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 취소자 또는 불합격자)

가) 역량 분야 : 졸업 시험으로 대체 (동 조 제3항 "라" 호 적용)

나) 자질 분야 : 장교 임관 희망자와 동일하게 적용

나. 군사학과 학생의 졸업인증제 적용 요건에 대한 세부 사항 : 붙임#2 참조.

다. 군사학과 학생 졸업 인증 및 졸업 자격 심의(서) : 붙임#3 참조

제 4 장 실병지휘

제25조 학년별 실병지휘 목표 및 구현 중점

군사학과 학생으로서 미래 장교의 품성과 자질을 계발하기 위하여 학년별 실병지휘 능력 향상(유지)을 위한 달성 목표는 아래와 같다.

구 분	실병지휘 목표 / 구현 중점
1학년	• 병영생활을 체험하여 군인적 기질 배양 (동·하계 병영체험 훈련) • 체력단련 강화, 도수체조 및 제식훈련 등 숙달 및 지휘요령 습득
2학년	• 군 간부 생활을 체험하여 군인적 기질 배양 (하계 병영체험훈련) • 체력단련 강화, 도수체조 및 제식훈련 등 숙달 및 지휘요령 습득
3학년	• 분·소대 단위 실병지휘 요령을 실습을 통해 장교의 품성과 자질 계발 • 부대지휘 및 관리 요령 등 함양
4학년	• 초급장교(전투지휘, 부대관리, 교육훈련)에게 요구되는 각종 상황을 모델화하여 종합 숙달 및 실병지휘 능력 완성을 통해 장교의 품성과 자질 구비 • 부대행정업무시스템, 전투준비태세 개념 및 절차, 소대전투 등 숙지(숙달) ※ 장교 임관 후 실무부대 조기 적응 능력 구비

제26조 병영체험 훈련

1. 신병교육, 병, 부사관, 장교 생활을 체험하여 야전 실무부대의 환경과 생활을 이해하고 군인적 기질을 배양하기 위하여 1·2학년을 대상으로 하계 병영체험훈련(I·II), 동계 병영체험훈련(1학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기 학점에 반영한다.
2. 하계 병영체험훈련 I 은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계 방학 기간 중에 광주지역 내에 위치한 향토사단에서 5일 이내 실시하며, 신병교육의 병 기초 훈련과정을 체험한다.
3. 하계 병영체험훈련 II는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계 방학 기간 중에 광주지역 내에 위치한 향토사단에서 5일 이내 실시하며, 실무부대의 병, 부사관, 장교의 생활을 체험한다.
4. 동계 병영체험훈련은 1학년을 대상으로 동계 방학 기간 중에 특전사 예하부대에서 5일 이내 실시하며 강인한 군인정신과 체력단련 등을 체험한다.
※ 훈련 입소부대 및 교육 내용은 군부대 사정에 의하여 변경 가능
5. 해외 연수, 교환학생 파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하계 병영체험훈련 및 동계 병영체험훈련 참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전 해당 학년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참자는 다음(또는 차기 년도) 훈련과정에 필히 참가해야 한다.

제27조 군사실무행정 교육

1. 야전에서 군사행정 실무에 필요한 사항을 군사행정실무 I로 4학년을 대상으로 정과시간에 반영하여, 공문서(보고서) 작성, 독도법 등 실습을 통해 야전 실무 요령을 습득하고 초빙교육, 안보현장견학, 선배와의 대화 등을 통해 부대지휘(관리) 요령 등 기초 능력을 배양한다.

제 5 장 잠재역량계발

제28조 목 적

자율학습과 특성화 교육 및 활동, 개인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직업 군인 및 군사 분야

전문가로서의 자질, 품성, 잠재역량을 계발하고, 개인의 재능과 특성 및 필요성에 따라 추가적인 잠재역량을 계발한다.

제29조 특성화 교육 및 활동

1. 직업 군인과 군사전문가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계발하기 위하여 체련단련, 생활 지도 및 잠재역량계발 과목 등과 연계하여 군사학과 관련된 행사 참가, 체험, 방문과 견학 등의 특성화 교육 및 활동을 실시한다.
2. 학과에서 통제(추진)하는 특성화 교육 및 활동(안보현장 견학, 실습과목 등)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 실시한다. 단, 가용 예산, 학사 일정,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군사학과장 결정에 의거 조정(생략, 일정 / 시간 변경 등)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공 통	•안보 초빙 강연, 군사학 학술세미나, CUMAS, 군사학과의 날 행사 등 참석			
체 험	•하계 병영체험 훈련 •동계 특전캠프 입소	•하계 병영체험훈련	-	-
방 문 / 견 학 [예]	•전적지 / 유적지 (포로수용소 등)	•해외문화 탐방 •전적지 / 유적지	•전적지 / 유적지 •지상군 페스티벌 행사 (무기 / 장비 전시)	•국군의 날 행사 •합동 임관식 행사

3. 학과에서 통제(추진)하는 특성화 교육 및 활동은 필히 전원 참석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복수전공 수업, 결석 등)로 인하여 참석이 제한될 경우, 사전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사전에 보고·승인 없이 임의로 불참할 경우 해당 과목 수업 시간에 대해 무단결석 처리 및 벌점을 부여한다.
4. 학과에서 통제(추진)하는 특성화 교육 및 활동은 가능한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 시간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제30조 군사 및 교양도서 탐독

1. 군사학과 학생은 교양지식 함양, 군사 전문지식 함양,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사 및 교양 관련 도서에 대한 탐독을 생활화해야 한다.
2. 학년별 지도교수는 학생들의 사고력 등 향상을 위하여 학과에서 통제(추진)하는 특성화 교육 및 활동(초빙강연, 안보현장 견학 등) 실시 후 감상문 또는 소감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우수작을 선정하여 포상(상점 부여, 부상 수여 등)을 실시하며, 교내 신문 등에 기고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제 6 장 학생 활동 지도

제31조 개인 상담 및 지도

1. 군사학과 학생은 올바르게 건전한 대학생활과 자신의 진로를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해당 학년 지도교수의 상담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군사학과 신입생은 1학년 1학기에 자기발견 및 이해를 위하여 지도교수의 심층 상담을 받아야 한다.
3. 지도교수가 지시한 양식과 방법에 의거 신상 자료, 성장기, 성격 및 행동 성향 진단, 대학, 장교, 인생 설계도, 학습 및 잠재역량개발 계획 등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교수의 가용시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시간을 약속하여 학기별 1회 이상 정기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5. 교수 또는 학생이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학년 지도교수 또는 기타 교수는 수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단, 해당 학년 지도교수가 아닌 다른 교수에 의해 상담을 실시했을 경우 상담을 실시한 교수는 그 결과를 해당 학년 지도교수에게 상담 종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6. 학업성적 저조자, 졸업인증요건 수준 미달자, 생활 태도 불량자 등은 해당 학년 지도교수가 지정한 시간에 특별 상담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7. 군사학과 교수는 학생지도시 제41조, 제43조, 제44조에 의거 경고 및 가정 통신문 발송, 벌점 부여 및 반성문 제출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제32조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

1. 군사학과 학생은 대학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군사학과 학생자치위원회의 임원으로 참여(활동)할 수 있으며, 올바르게 건전한 학생회 활동을 선도하고 모범적인 활동을 해야한다.
2. 군사학과 학생자치위원회 운영 내규는 군사학과 운영 내규의 하위 규정으로서 자체적으로 결정이 가능하나, 사전 군사학과장의 승인을 득하고 시행해야 한다.
3. 군사학과 학생의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가. 군사학과 학생자치위원회 간부 학생 및 동아리별 팀장의 임무수행 기간은 1년 (매년 1. 1 ~ 12. 31)으로 한다. 단, 학사 일정 및 학과 운용계획을 고려하여 군사학과장 통제(승인)에 의거 임무수행 개시 및 종료 시기에 대해 조정할 수 있다.
(예; 임명장 수령 또는 지휘권 교체 완료 직후 등)
 - 나. 군사학과 자체에서 운용하는 동아리 활동 외 대학 내·외부의 다른 동아리 활동이 필요하거나 군사학과 이외의 학생이 군사학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동아리에 가입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사학과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다. 동아리 활동 규정은 동아리별 자치적으로 결정하되, 군사학과장의 승인을 득하고 시행해야 한다.
 - 라. 군사학과와 동아리 활동에 대한 업무 관장은 부대대장 학생이 한다.
 - 마. 동아리별 팀장은 4학년이, 부팀장은 3학년이 임무를 수행한다.
 - 바. 군사학과 학생자치위원회와 동아리는 매년 2월 28일 한 연간 행사 및 활동 계획을 군사학과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
 - 사. 군사학과 학생자치위원회 및 동아리는 매학기 말 활동 및 예산사용 결과를 학생들에게 공지하고, 그 결과를 군사학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군사학과 학생자치회 및 동아리 활동을 위해 필요한 예산 소요 및 확보 계획 (금전
거출 등)은 군사학과장의 승인을 득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33조 군사학과 학생자치위원회 지휘 근무

1. 군사학과 학생자치위원회의 지휘근무체계를 유지하는 목적은 군사학과생으로 하여금
준법정신과 창의성 및 자율성 등을 함양하고 지휘통솔 능력을 배양하며, 군사학과에
입학한 학생 전원이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전원 졸업 및 임관을 위한 관리, 학생
상호간 잔존하고 있는 부조리 색출 및 제거, 신입생의 대학 생활 조기적응 지도,
잠재역량의 극대화에 있다.
2. 지휘근무자가 수행해야 할 임무는 정상적인 지휘활동과 대학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와 군사학과의 제반 자치활동 업무(체육대회, M.T, 군사학과의 날 행사,
병영체험, 앨범 제작 등)를 망라하여 수행한다.
3. 군사학과 학생자치위원회의 지휘근무 편성은 다음과 같다.
 - 가. 1학년 ~ 4학년을 통합하여 대대로 편성한다.
 - 나. 각 학년별 1개 중대로 편성하고, 1개 중대는 4개 소대로 편성한다.
 - 다. 대대장 및 부대대장 학생은 4학년(승급 예정자) 중에서 선거 결과 의거 선발(임명)
하고, 대대 참모 학생은 4학년(승급 예정자) 중에서 대대장과 부대대장 및 여학생
대표가 상호 합의하여 추천한 학생 중에서 학과장이 임명한다.
 - 라. 대대 참모학생은 인사참모, 정보·작전참모, 군수참모, 공보정훈참모 학생으로
편성한다.
 - 마. 중대는 중대장 학생, 부중대장 학생, 소대장 학생으로 편성한다.
 - 바. 군사학과 전체 여학생의 대표는 4학년 여학생 중 대대장 또는 부대대장 또는 대대
참모 또는 중대장 또는 부중대장 등으로 선발된 학생 중 군사학과장이 지정한 여학
생이 그 임무를 병행하여 수행한다.
 - 사. 여학생이 학년별 중대장 또는 부중대장 학생으로 선발(당선)되었을 경우, 해당 학년의
여학생 대표 직책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단, 중대장 또는 부중대장 학생 중 여학생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학년 지도교수가 임명하여 운용한다.
4. 군사학과 학생자치위원회의 간부(임원) 학생 선출을 위한 간부 학생 입후보 자격 조건
및 선거관리 절차와 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 가. 간부 학생 입후보 자격 조건

직 책		입후보 자격 조건
대대 간부 학생	대 대 장	① 4학년 승급 예정 학생
	부대대장	② 입후보 당시 기준, 전학년 성적 평균 B학점 이상 취득 자
	대대 참모	③ 경고장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자
	전 체 여학생 대 표	④ 졸업인증요건 목표 달성 자 ⑤ 품행이 단정하고 리더십 보유 자 ⑥ ① ~ ⑤까지 자격조건 중 어느 한 가지 항목이라도 조건 미충족자 : 군사학과장 상담 실시 및 군사학과장 승인 시 후보자 등록 가능
중대 간부 학생	중 대 장	① 2 ~ 4학년 승급 예정 학생(남·여 공통) ② 입후보 당시 기준, 전학년 성적 평균 B학점 이상 취득 자 ③ <u>학년별 잠재역량 목표 또는</u> 졸업인증요건 목표 달성 자
	부중대장	④ 품행이 방정하고 리더십 보유 자 ⑤ ① ~ ④까지 자격조건 중 어느 한 가지 항목이라도 조건 미충족자 : <u>해당 학년 지도교수 상담 및 승인 시</u> 후보자 등록 가능 ※ 1학년 : 입학과 동시 해당 학년 지도교수가 임시적으로 임명하여 운용하고, <u>학과 생활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입학 후 1개월 이상 경과),</u> 선거 절차를 준수하여 선발 ※ <u>여학생 대표 선발 : 군사학과 운영내규 제33조 제3항 적용</u>
	소 대 장	

나. 입후보 등록(취소, 포기) 절차 및 방법

구 분	대대 간부 학생	중대 간부 학생
선거 실시 4주 전	① 개인이 학생자치위원회에 출마 의사 표시 ② 자격 검증에 필요한 서류 제출	① 개인이 해당 학년 지도교수에게 출마 의사 표시 ② 자격 검증에 필요한 서류 제출
선거 실시 3주 전	③ 학생자치위원회 ⇒ 자격 심의	③ 해당 학년 지도교수 ⇒ 자격 심의
선거 실시 2주 전	④ 학생자치위원회 대대장 학생 ⇒ 군사학과장에게 후보자 자격 검증 / 심의 결과 보고 ⑤ 군사학과장 - 대대장 학생(상호 합의) ⇒ 경선(투표) 참여 대상자 확정 ⑥ 학생자치위원회 대대장 학생 ⇒ 입후보자에게 자격검증 결과 통보	④ 해당 학년 지도교수 ⇒ 경선(투표) 참여 대상자 확정 ⑤ 해당 학년 지도교수 ⇒ 입후보자에게 자격검증 결과 통보
선거 실시 1주 전	⑦ 입후보자 ⇒ 선거 출마 포기(기권) 의사 표시 ⑧ 학생자치위원회 ⇒ 투표(선거) 준비 ※ 일시 / 장소, 투표 용지, 기타	⑥ 입후보자 ⇒ 선거 출마 포기(기권) 의사 표시 ⑦ 해당 학년 지도교수 ⇒ 투표(선거) 준비 ※ 일시 / 장소, 투표 용지, 기타

※ 출마(경선) 포기 의사 시기 및 기간 : 선거 실시 4주 전부터 선거 실시 1일 전 17:00까지
군사학과장 또는 해당 학년 지도교수에게 본인이 직접 포기 의사 표현

다. 학생자치위원회의 직책별 간부학생 선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선발 절차
대대 간부 학생	대 대 장 / 부대대장	① 1 ~ 3 학년 학생 전원이 참가하여 직책별 직선제(투표)로 선발 ② 부대대장 학생으로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 ☞ 대대장 학생 선발 선거 결과 차점자 순으로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부대대장으로 선발 ③ 부대대장 학생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 ㉞ 대대장 · 여학생 대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사학과장이 임명 ④ 상기 ㉞항에 의한 부대대장 선발(임명) 제한 시, 4학년 부중대장으로 선발(임명)된 인원이 부대대장 임무 겸직
	대대 참모	① 대대장 · 부대대장 · 여학생 대표 학생이 협의하여 후보자(적격자)를 심의 후 간선제로 대상자 선발 ② 대상자 선발 결과를 군사학과장에게 보고, 승인 건의 ③ 군사학과장과 학생자치위원회 대표 학생 간 상호 협의 하 직책별 적격자 (입후보 기준 충족자) 결정
중대 간부 학생	2 ~ 4학년 중 대 장, 부중대장,	① 해당 선발 ② 중대장 학생 선발 선거 결과를 반영하여 차점자 순으로 <u>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부중대장으로 선발</u> ③ 학년별 중대장 · 부중대장 학생 중 여학생이 없을 경우, <u>여학생 대표 별도 임명</u> ☞ 해당 학년 지도교수가 중대장, 부중대장 학생과 의견을 조율하여 임명 ※ 전체 여학생의 대표 학생 : 4학년 여학생 중 대표 학생으로 선발(임명)된 여학생이 임무 겸직
	2 ~ 4학년 소 대 장	① 해당 선발 ② 소대장 학생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 ㉞ 중대장 · 부중대장 · 여학생 대표 학생 이 협의하여 후보자(적격자)를 심의 후 간선제로 대상자 선발 ④ 대상자 선발 결과를 해당 학년 지도교수에게 보고, 승인 건의
	1학년 중 대 장, 부중대장, 소 대 장	입학 ~ 1개월 이내 ① 학년 지도교수에 의해 잠정 임명 운용 입학 후 학과 생활 1개월 이상 경과 후, 최단 시간 내 ① 상기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2 ~ 4학년 중대장 / 부중대장 / 여학생 대표 / 소대장 선발 절차를 준수하여 선발 ② 중대장 · 부중대장 학생 중 여학생이 없을 경우, 여학생 대표 별도 임명

※ 상기 절차에 명시되지 않은 우발상황 발생 시 긴급 교수회의 실시 후 진행

라. 선거 관리

1) 선거 실시 절차 (방법)

- 가) 학생자치위원회 간부 학생(인사참모)에 의한 투표 절차 및 주의사항 설명
- 나) 경선 참여자들의 정견 발표 (1인당 5분 이내)
- 다) 경선 참여자들의 정견 발표 후 정해진 순서 및 절차에 의거 비밀투표 실시

2) 선거 공정관리 : 현 학생자치위원회 간부 학생이 임무 수행, 교수 지도

- 가) 투표소, 투표용지, 투표함 등 준비,
- 나) 선거인 명부 확인 후 투표용지 배부

- 다) 투표 안내, 지도
 라) 투표 종료 후 개표 및 검표 (투표 참여 인원과 투표용지 수 일치 여부 확인)
 마) 투표 실시 전·중·후 특정인을 당선 또는 낙선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
 · 부당한 행위 발견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뢰 및 당선자에 대한 무효 처리
 바) 검표 결과 발표 (공개)

3) 당선인 확정 절차 (방법)

가) 1차 투표 실시 결과 전체 투표 참여 인원의 과반수 이상 득표자 중 최다 득표자가 당선인으로 확정

나) 1차 투표 결과 최다 득표자가 전체 투표 참여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율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는 아래 절차에 의거 진행한다.

(1) 다수 득표자 1·2위를 대상으로 2차 투표(재투표) 실시

(2) 2차 투표(재투표) 결과 최다 득표자가 당선인으로 확정

5. 군사학과 학생자치위원회의 간부(임원) 학생의 직책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

직 책		임무 / 역할
대대장 학생		• 군사학과 전체 학생 대표 임무 수행 • 연간 학생자치위원회 활동 계획 수립 / 시행 • 군사학과 학생자치위원회 사무실 관리, 유지 • 학생 지휘통제 (각종 행사 지휘, 전체 교육 시 보고 등) • 군사학과 학생자치위원회 회의 소집, 주관 (월 1회) • 학생 상·벌점 / 포상 건의 (월 1회) • 학군단 - 대학 총학생회 - 단과대학 학생회와 관련 업무 담당 • 군사학과장 / 업무 분야별 지도(통제)교수의 지시사항 시행, 결과 보고 • 기타 부여된 임무 수행
부대대장 학생		• 대대장 학생 지휘 보좌 • 대대장 학생 유고 시 대대장 학생 직무 대행 • 군사학과 동아리 운영 / 활동 관련 업무 관장 (총괄 통제) • 군사학과장 / 업무 분야별 지도(통제)교수로부터 부여 받은 업무 수행 - 행정실 앞 잠재역량계발 현황판 최신화 기록 유지 - 1~2학년 동·하계 병영체험훈련 지원 업무 총괄 통제 등 • 기타 부여된 임무 수행
대 대 참 모 학 생	공 통	• 대대장 / 부대대장 학생 임무 수행 보조 (조력자) ※ 첩보수집, 판단, 보고, 지시 / 강조 사항 전파, 임무수행 실태 감독 등 • 해당 참모업무 분야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함양(향상) 활동 강화 • 참모 학생 / 학년별 중대장 학생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 지원 • 기타 부여된 임무 수행
	정 보 작 전 참 모	• 신입생 O.T, 종강식, 개강식, 안보현장 견학, 병영체험훈련 입·퇴소 관련 훈련 진행 / 행사 계획수립 - 준비 - 실시 등 업무(총괄) • 학생 관련 정보(보안), 작전 / 교육훈련 관련 업무 수행 - 학과 전체 학생 교육, 초빙강의 등 관련 업무 지원(강의실 준비 등) - 강의실, 휴게실, 생활관 등 교육 보조장비(빔프로젝트 등) 가동상태 확인, 보고 (월 1회, 수시 / 학과장) - 체력단련 관련 물자 교체 / 정비 / 획득 소요 판단, 보관 / 관리 관련 업무 - 학생 수강신청 관련 업무 지원 등

직 책		임무 / 역할
대대 참모 학생	인 사 참 모	• 졸업식, 승급식, 입학식, 차기 학생자치위원회 대대 간부(대대장, 부대대장) 선발 / 선거, 지휘권 교체 행사 등 업무 (총괄) ※ 계획수립, 준비, 실시, 사후검토 / 후속조치 등 • 학생자치위원회 운영 예산 / 회계 관련 업무 (총괄) - 각종 행사 (체육대회, 군사학과 의 날 행사, M.T 등) 관련 소요예산 판단, 사용계획 수립, 집행, 회계장부 정리 ⇒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예산 결산 결과 보고(학과장) / 공지(학생) - 분기 단위 전체 예산 결산 보고(학과장) / 학생에게 공지(필요시) • 사기 / 복지 관련 업무 (총괄) - 학생증 / 장학증 발급 지원 - 장학생, 해외 어학연수 / 문화탐방 인원 선발 등 관련 업무 지원 - 간부 학생 워크숍 행사 준비, 지원 - 학생 위로, 격려 관련 행사(활동) 건의(수시 / 학과장) - 졸업앨범 제작 관련 업무 등 • 군기 · 질서 유지 업무 (총괄) - 상 · 별점 결산 결과 보고(월 1회 / 학과장) / 후속조치 (상장, 경고장 수여 등) - 상별위원회 심의(징계) 건의 등 - 각종 안전 / 군기 사고 예방 업무 : 교육, 순찰, 현장지도 등 • 군사학과 총동문회 운영 관련 업무 수행
	군수 참모	• 보급 지원 업무 (총괄) - 신입생 제복 관련 요구서 작성, 체촌, 납품, 하자 발생 시 후속조치 - 1 ~ 2학년 동 · 하계 병영체험 훈련소요 물자 확보, 지원 - 각종 행사 / 교육간 소요물자 파악, 준비, 분배, 후속조치 등 • 수송 관련 업무 (총괄) - 이동(수송)용 버스 지원 관련 업무 (용역, 도착시간 통제 등) • 강의실, 생활관, 휴게실 등 장비 / 시설관리 업무 (총괄) - 냉 · 난방 장비(시설) / 조명시설, 창문, 책상 / 의자 등 교체 · 정비, 추가 획득 소요 등 상태 확인, 보고(월 1회, 수시 / 학과장) - 강의실, 휴게실, 생활관 등 조명시설 확인, 보고, 조치
	공보 정훈 참모	• 각종 행사(활동) 종료 후 홍보 / 보도 자료 준비, 군사학과장 (입시 · 홍보업무 담당 교수) 보고 · 승인 후 후속 조치 • 신입생 선발(모집) · 등록 · 입학 등 관련 업무 - 학과 홈페이지 최신화 유지 (월 1회, 수시) - 입시 전형 절차, 2단계 평가, 등록 관련 절차 · 방법 등 안내 / 지원 - 입시홍보 활동 실태 확인, 결과 보고(담당교수), 협조(책임 학생) - 군사학과 지원 학생 학생들에 대한 전형 참여 / 입학 독려 활동 • 학과 자체 각종 행사시 사회(진행)자 임무 수행

직 책		임무 / 역할
학년별 중대장 학생		• 대대 지휘부(대대장 ~ 참모) 학생 업무 보좌 • 중대 지휘 / 통제 • 지도교수 지시사항 수명 • 학생자치위원회 / 행정실 앞 현황판 등 최신화 유지 (월 1회) • 상·별점 및 포상 건의 • 지휘근무일지 작성, 유지 • 군사훈련 준비 및 확인 • 중대원 신상 / 애로(건의)사항 파악, 보고, 유지 • 해당 학년 휴게실 사물함 / 비품, 시설 등 관리 (정: 중대장, 부: 부중대장) • 기타 부여된 임무 수행
학년별 부중대장 학생		• 중대장 학생 지휘 보좌 • 중대장 학생 유고 시 중대장 학생 직무 대행 • 지도교수로부터 부여 받은 특별 및 기타 업무 수행
여학생 대 표 학 생	4학년	• 군사학과 전체 여학생 대표 임무 겸직 • 대대장·부대대장·4학년 중대장 학생 지휘 보좌 • 여학생 휴게실 관리, 운영 • 기타 부여된 임무 수행
	1~3학년	• 중대장 학생 지휘 보좌 • 해당 학년 여학생 대표 임무 수행 • 여학생 신상 / 애로(건의)사항 파악, 보고, 유지 • 기타 부여된 임무 수행
학년별 소대장 학생		• 중대장, 부중대장, 여학생 대표 학생 지휘(업무) 보좌 • 소대 지휘 / 통제 • 소대원 동기유발 / 토론회 주관 • 소대 수행 업무 종합 / 통제 • 소대원 신상 / 애로(건의)사항 파악, 보고, 유지 • 기타 부여된 임무 수행

제34조 종교 활동

1. 군사학과 학생은 참된 신앙생활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 인생관, 국가관, 군인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
2. 특정 종교에 대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타인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이비 이단 논란이 있는 종교활동은 일체 금지한다.
3. 군사학과 학생이 사이비 또는 이단 논란이 있는 종교 활동을 하거나 타인에게 **특정 종교의** 가입을 강요할 경우에는 군사학과 운영내규 제39조(군사학과 상·별 심의위원회)에 의거하여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취소 및 제적 여부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육군본부(또는 학군단)에 통보하고, 대학에 징계 결의를 건의(요구)한다.**

제35조 대외 활동

1. 군사학과 학생은 개인 또는 단체로 대외활동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사학과장의 승인을 득하고 참가해야 한다.

2. 군사학과 학생은 대외활동에 참여시 대학과 군사학과와의 자긍심을 견지하고 명예를 고양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대외활동간 올바른 태도와 언행을 유지해야 한다.
3. 군사학과 학생은 대외활동에 참가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대외활동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군사학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6조 국외여행 및 파견

1. 배낭 여행 등 사적인 해외여행(가족 여행 포함)은 학과 수업, 하계 병영체련 훈련 및 동계 병영체련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2주전에 해당 학년 지도교수에게 해외여행계획서(붙임# 7, 해외여행계획서 양식 참조)를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에 실시해야 한다.
2. 해외 연수, 교환학생 파견 등 기타 사유로 국외 여행 및 파견 시에는 학점 인정, 졸업학점 취득, 졸업인증요건 충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하여 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2주전에 해당 학년 지도교수에게 해외여행계획서(붙임# 7, 해외여행계획서 양식 참조)를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에 실시해야 한다.

제 7 장 포상 및 징계

제37조 목 적

군사학과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시행령(대통령령) 및 시행규칙(국방부령), 군사학 발전 협력 합의서(육군본부와 대학 간 체결), 대학 학칙 제11장(학생 활동) 및 제12장(규율, 상벌과 복장), 대학 학생 상벌 규정 제2장(포상) 및 제3장(징계)을 준수하고 세부적인 활동은 군사학과 운영 내규에 반영하여 올바르게 건전한 생활 습관과 자율적인 기강유지 및 준법정신을 고취하는데 있다.

제38조 상·벌점 제도

1. 군사학과 학생은 대학 생활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학과 생활의 자발적인 참여 및 동기 부여를 위해 자체 상·벌점 제도를 운영한다.
2. 대학 기숙사에서 통보된 상·벌점은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적용한다.
3. 군사학과 교수는 아래에 제시된 제4항(상점 부여 기준), 제5항(벌점 부여 기준)에 의거 상·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4. 상점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상 점 내 용		상 점
표 창 / 상 장 수 상	■ 대통령 표창(상장)		50
	■ 국무총리, 장관 표창(상장)		30
	■ 합참의장, 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표창(상장)		20
	■ 대학 총장, 군단장급 표창(상장)		15
	■ 특별시·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표창(상장)		15
	■ 지방자치단체장(특별시, 광역시 제외) 표창(상장)		10
	■ 단과대학장, 군사학과장, 사(여)단장급 표창(상장)		10
	■ 연(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표창(상장)		8
	■ 대·내외 영어 웅변대회 또는 외국어 경연대회 우수상 이상 수상자	전국 대회	5
		지역 대회	3
	■ 대외 학술경연대회 입상		5

구 분	상 점 내 용	상 점
대 외 적 명예 고양	■ 대민 관련 선행 미담자, 대군 신뢰도 증진 기여자	5
	■ 대외 간행물(신문, 방송 등) 원고 게재 등 군사학과 학생 위상 제고에 기여한 자	5
	■ 사회봉사 활동 참여자(6개월 이상), 헌혈 5회 이상 실시자	3
	■ 타 기관(군부대 포함)으로부터 선행 내용이 통보된 자	5
	■ 타 기관(군부대 포함) 및 학교 주관 세미나 / 경연대회에서 우수상 이상 수상자	3
	■ 기타 대학 / 군사학과 명예 고양을 위해 기여한 학생	5
능력 향상 / 자기개발 / 모범 행동	■ 학업성적 우수 : 학과 수석(10점), 학교 / 단과대학 수석(20점)	10 ~ 20
	■ 군사훈련 우수 : 1등(5점), 2등(4점), 3등(3점) - 1 ~ 2학년 동·하계 병영체험훈련 / 3 ~ 4 학년 학군교 군사훈련	3 ~ 5
	■ 외국어 상위 수준 자격증 취득 (TOEIC 800점 이상)	5
	■ <u>한국어 / 한국사 / 상담사 / 드론 조종사 1종 등 군에서 장기복무자 선발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분야에 대한 자격증 취득</u>	3
	■ <u>전산(정보화) 분야 자격증 취득 (1개 이상)</u>	3
	■ 무도 유단자 (3단 이상)	3
	■ 학기별 벌점을 1회도 받지 않은 학생	3
	■ 군사학과 신입생 모집 및 입학 활동 기여자	5
	모교(고향) 후배 / 친·인척 등 군사학과 입학 유공자 (1명 이상)	3
	기타 입시·홍보 업무 유공자	3
기 타	■ 동기 / 군사학과 발전, 화합·단결을 위해 적극 기여한 자	5
	■ 군사학과 지휘근무 및 각종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자	3
	■ 기본자세, 복장 및 용모가 단정한 자	2
	■ 충·효·예 분야에서 활동이 우수한 자	3
	■ 교육 및 훈련 준비, 실시간 술선수범한 자	10
기 타	■ 지휘근무 활동 우수자	2
	■ 각종 사고 예방 / 활동에 기여한 자 (적시 보고, 현장 조치 등)	20

5. 벌점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벌 점 내 용	벌 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 상행위 등 허가되지 않은 활동 / 권한 행사	10
	■ 집단 행위 금지의무 위반 (집단 / 연명 상신 등)	20
	■ 학과 관련 사항 외부 유출로 인한 명예 실추(훼손) 행위	20
	■ 시험 부정행위	10
	■ 특정 종교 강요 행위	5
	■ 허위 보고 (지각, 결석 사유 등)	5
	■ 보고·승인되지 않은 금전거출 행위	20
	■ 음주 추태 등 군사학과 학생으로서 명예 실추 행위	20

구 분	별 점 내 용		별 점
명령 복종 / 보고 의무 위반	■ 합법적이고 정당한 출석 / 소집에 3회 이상 불응		10
	■ 합법적이고 정당한 지도 / 지시에 3회 이상 불응		10
	■ 승인되지 않은 대외활동 참가		10
	■ 법규(규정) 위반 / 위반 유발(유도), 사고 유발(유도) 행위		20
	■ 보고 / 건의 의무 위반		5
	■ 합법적이고 정당한 출석 / 소집에 불응 (1회시 마다)		3
	■ 합법적이고 정당한 지도 / 지시사항 불이행 (1회시 마다)		3
복장 / 태도 의무 위반	■ 교수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20
	■ 상급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5
	■ 학생 상호간 언행 불량, 사고 유발 행위		2
	■ 용모 / 복장 불량 (장발, 제복착용 규정 미준수 등)		2
	■ 기타 품위 저해 행위		2
사적제재 / 직권남용 / 군기문란	■ 교수 지위 도전 / 심각한 명예 실추행위 (유언비어 날조 / 유포 등)		징계
	■ 성폭행, 성추행 등 성 군기 문란(언어, 신체) 행위		징계
	■ 폭언, 폭설, 구타 / 가혹행위, 인격모독 행위		20
	■ 인권 침해 행위 (핸드폰 불법 검색 등)		20
	■ 사생활 간섭 행위 (복장 착용, 이성교제 등)		15
	■ 하급생 임의 호출, 교육, 지도, 부당한 선도행위 등		10
	■ 의견 건의,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 또는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10
	■ 학과 내에서 파벌 형성 또는 조장하는 행위		10
	■ 상 · 하급자 / 동료 음해 또는 학과 · 학년 단결 저해 행위		10
구 분	별 점 내 용		별 점
학습태도	■ 학기별 학업성적 저조 (70/100 미만)		5
	■ 학년-학기별 잠재역량 목표 또는 졸업인증 요건 목표 미달자		5
	■ 수강과목 학점 미 취득 / 임의 포기		5
	■ 무단 결석		5
	■ 무단 지각	▶ 수업 시작 후 1시간 이상 초과	4
		▶ 수업 시작 후 30분 이상 초과	3
		▶ 수업 시작 후 10분 초과	2
		▶ 수업 시작 후 10분 이내	1
	■ 조 퇴	▶ 2H 수업의 경우, 수업 1H 경과 후	1
		▶ 1H수업의 경우, 수업 시작 전	1
	■ 결석, 출장, 치료 등의 사유 발생에 따른 증빙서류 미제출		2
■ 수업 분위기 저해 행위 : 핸드폰 사용, 취침, 무단이탈 등		2	
기 타	■ 유언비어 유포 / 전파 행위		20
	■ 학교 / 학과 시설, 장비, 비품 등 파손 및 분실		10

6. 상·별점 부여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장려사항이나 위반사항은 군사학과장 승인 하 3점 이내의 상·별점을 부여할 수 있다.

7. 군사학과 학생은 예비 장교 후보생으로서 제반 법규의 자발적 준수, 학업 기강 문란 행위 차단, 대민물위사고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고를 구분하고 절차(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1급 사고는 군사학과 상·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자체 심의를 실시하고, 중대한 사항은 대학 징계위원회에 건의한다.(학칙 55조에 의거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주관)

나. 2급 사고는 군사학과 상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통해 별점을 부여한다.

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급 사고	2급 사고
■ 군사학과장 또는 해당 학년 지도교수의 승인 없는 금전거출, 집합 / 열차려 행위 ■ 교수 / 교관(병영체험훈련 포함)에게 반항 또는 불손한 언동 ■ 학생 상호간 구타 / 가혹행위 ■ 평가 / 교육 / 군사훈련에 고의적 불참 ■ 이적 및 불건전한 단체 가입, 활동 참여 ■ 마약류 불법 휴대 / 복용 ■ 음주 운전 및 교통사고(본인 과실) ■ 성관련 범죄행위(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기타) ■ 절도 / 도박 행위 ■ 대민피해 야기 / 명예 실추 행위 ■ 집단행동 모의 또는 선동하는 행위 ■ 안보 / 군 / 학교 / 교수에게 해를 주는 유언비어 조작 및 유포 행위	■ 군사학과 상급 학생에게 불손한 언행 ■ 군사학과 학생 상호간 격심한 언쟁 ■ 무계 결석(고의성이 없는) ■ 교수 / 교관(병영체험훈련 포함)의 정당한 지시 또는 통제에 불응 ■ 병영체험훈련 간 조교와 싸우는 행위 ■ 허위 보고 / 미보고(의도적) ■ 학생자치위원회 간부 학생의 정당한 지시 또는 통제에 불응 ■ 학교 또는 군부대의 주요 장비 분실, 파손(의도적) ■ 학교 또는 군부대의 시설물 파손(의도적)

라. 1급 사고 발생 시 별점 20점 이상을 부여하고, 2급 사고 발생 시 별점 5점 이상을 부여한다.

8. 군사학과 학생자치위원회는 상·별점 부여 결과에 대해 월 1회 결산을 실시하고 결과는 반드시 공개한다.

가. 상·별점 결산 범위 : 군사학과에서 부여한 상·별점 +
대학 기숙사에서 부여한 상·별점

나. 상·별점 결산 절차 / 방법

- 1) 매월 마지막 근무일 기준, 다음 달 1주 이내 상·별점 결산
- 2) 별점은 상점으로 상쇄 가능
- 3) 상·별점 결산 실시일 기준, 1주 이내 군사학과장에게 보고(결재)

다. 상·별점 결산 결과에 대한 조치

- 1) 군사학과 상·별 심의위원회 회부, 심의
- 2) 군사학과 포상 및 대학 징계 건의
- 3) 생활기록부에 기록, 유지

제39조 군사학과 상·별 심의위원회

1. 군사학과 상·별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군사학과장), 위원 3~5명(군사학과 교수, 학생 대표 1명), 간사 1명(군사학과장이 지명한 교수 또는 행정 직원)으로 구성한다.
2. 군사학과 상·별 심의위원회는 군사학과 학생에 대한 포상 및 징계 관련 사항을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건의한다.
3. 대학 학생 상벌 규정 제2장(포상)을 준수하고 포상 심의 대상자는 군사학과 운영내규 제40조에 의한다.
4. 대학 학생 상벌 규정 제3장(징계)을 준수하고 징계 심의 대상자는 군사학과 운영내규 제41조에 의한다.
5. 군사학과 학생 중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 취소 통보 및 제적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군사학과 상·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선발 취소 사유에 해당 시에는 대학장에게 건의하여 단과대학 학생지도위원회 징계 결의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취업학생처와 학군단에 통보한다.

나. 징계심의 대상 학생은 학칙 위반 내용 1부, 본인 사유서 1부, 그 밖의 참고사항을 첨부한다.

1) 본인 사유서(진술서/경위서) 작성 양식 : 붙임#8 참조

다. 징계심의 결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을 상실(선발 취소 또는 제적)된 학생은 기 수령한 군가산복무지원금을 절차에 의거 반납하여야 한다.

제40조 군사학과 포상

1. 대학 포상은 대학 학생 상벌 규정(제2장)을 준수하고, 학과 포상은 군사학과 학생으로서 ① 솔선수범 및 모범적 규정 준수, ② 학업성적 우수, ③ 군사학과 발전에 기여 및 명예 고양, ④ 봉사와 선행 등의 공로가 있는 학생을 발굴·포상하여 사기를 앙양하고, 타 학생이 본받아 건전한 기풍을 진작하는데 있다.
2. 포상 조치는 표창과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표창은 공로표창과 선행표창으로 구분하고, 상장은 학년말 상과 졸업 상으로 구분하여 수여한다.

종 류	기 준	수여권자	시 기
표창	공 로	■ 대학 총장 / 단과대학장 (추천)	수 시
		■ 군사학과장 - 대학 총장 / 단과대학장 표창 추천자 중 비선발 자 - 상점 10점 이상인 학생	학기말
	선 행	■ 대학 총장 (추천)	수 시
		■ 군사학과장 - 대학 총장 표창 추천자 중 비선발 자 - 상점 10점 이상인 학생	학기말
		■ 군 부대 결정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수 시

종 류		기 준	수여권자	시 기
상 장	학 년	■ 학업성적 우수 ■ 군사훈련 우수	■ 군사학과장 ■ 군 부대 결정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학기말
	졸 업	■ 졸업성적 우수 ■ 학과발전 기여 등	■ 대학 총장 / 단과대학장 (추천) ■ 조선대학교 동문회장 (추천) ■ 육군 참모총장, 제2작전사령관, 육군 인사사령관, 제31보병사단장, 제11특전여단장, 조선대 학군단장 (추천) ■ 군사학과장	졸업 시

제41조 군사학과 징계

1. 군사학과 학생에 대한 징계는 대학 학칙 제12장(규율), 제62조(상벌과 복장)와 대학 학생 상벌 규정(제3장)을 준용한다.
2. 군사학과 학생에 대한 징계는 군사학과의 명예 및 도덕성을 해치는 행위와 규정 위반 행위를 경고하며 반성을 유도하고, 절차탁마의 건전한 기풍을 조성하며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는 올바른 생활 습관(태도)을 형성하는 데 있다.
3. 군사학과 학생으로서 1급 사고 등 중대한 위반 행위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 취소 심의, 제적 심의 등의 대상 인원에 대해서는 대학장에게 건의하여 단과대학 학생지도위원회 징계 결의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취업학생처와 학군단에 통보한다.
4. 군사학과 학생에 대한 징계 건의는 분기 또는 학기별 상·벌점 결산 결과, 교수회의 결과(심각한 군기문란 행위) 등을 기초로 상·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의 한계(수위)를 정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① 반성문 제출 (5일 이내), ② 학과장 명의의 경고장 수여 및 가정 통신문 발송, ③ 본인 및 부모의 각서 제출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5점 이상 초과자 : 반성문 제출

나. 7점 이상 초과자 : 경고장 수여 및 가정 통신문 발송

다. 10점 이상 초과자 : 본인 및 부모의 각서 제출

라. 20점 이상 초과자, 2회 이상 경고장 수여자, 본인 및 부모의 각서 2회 이상 제출자 : 군사학과 상·벌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학에 징계(제적 심의) 건의, 학군단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 취소 요청 등의 조치를 한다.

마. 기숙사 입주 학생 중 징계사유가 발생시 기숙사 자체 조치와 상관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한다.

5. 제적 심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반사회적 범죄행위(성범죄, 절도, 강간, 살인 등)

나. 정치 관여 행위

다. 집단시위 주동

라. 불법·불건전 단체 가입 / 모임 참석

- 마. 사이버 이단 논란 종교 활동
- 바. 교수 또는 학과 명예 실추 행위 ("가"항 제외, 유언비어 날조 / 유포)
- 6.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가. 퇴학 또는 제적된 때
 - 나. 질병 기타 심신 장애로 휴학 또는 입영연기 기간이 2년을 초과할 때
 - 다. 성적이 현저히 불량할 때(C학점 미만)
 - 라. 품행이 불량할 때
 - 마. 허가 없이 전학 및 전과할 때
 - 바. 군 인사법 제 10조(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의 규정에 위반한 때
 - 사. 기타 장교 임관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때
- 7. 군사학과는 대학의 학칙 제62조(징계)와 위의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 위반자는 대학에 징계(제적 심의) 건의 또는 학군단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 8 장 장 학 금

제42조 장학금

- 1. 대학 장학금 지급은 대학 장학 규정을 준수한다.
- 2. 군사학과 성적 및 면학 장학금은 대학 장학금 지급 규정 범위 안에서 정한다.
- 3. 군사학과에서 선정하는 성적 및 면학 장학금은 군사학과장 주관 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한다.
- 가. 세부 내용 : 붙임#4[군사학과 장학생 선발 방침 / 절차] 참조

제 9 장 주요 행사 및 기타

제43조 군사학과의 날

- 1. 군사학과의 날을 제정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가. 군사학과에 재직 중인 교직원과 재학생 및 졸업생과의 화합 및 소통의 기회 제공
 - 나. 재학 중인 학생 상호간(상급생과 하급생간, 동기생간) 또는 재학생과 졸업생간 친목도모와 화합의 여건 보장
 - 다. 직업 군인과 군사전문가로서의 자질 배양을 위해 요구되는 교양과 품격 구비
- 2. 군사학과의 날 행사 시행 방침은 다음과 같다.
 - 가. 군사학과의 날 행사는 매년 12월 1주차 금요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 운영 일정을 고려하여 군사학과장 승인하 행사 일정은 변경할 수 있다.
 - 나. 군사학과 학생자치위원회 대대장 학생은 군사학과의 날 행사 계획을 행사 실시일 기준 1개월 전에 군사학과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 다. 군사학과의 날 행사는 1부 행사, 2부 행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1) 1부 행사 (일과 시간 내) : 대학 내에서 학술세미나, 안보초빙강연 위주로 진행
 - 2) 2부 행사 (일과 이후) : 대학 또는 외부 시설을 활용하여 화합·단결을 위한 한마당 잔치 활동(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 등) 위주로 진행
- 라. 군사학과의 날 행사 참석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1부 행사(학술 세미나) : 군사학과 교직원, 재학생, 주제 발표 및 토론 참여 지정 인원(외부 초청 인원), 초빙 강사
 - 2) 2부 행사 (한마당 잔치) : 군사학과 교직원, 재학생, 졸업생(참석 희망자)
- 마. 2부 행사(한마당 잔치) 진행 간 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팀)는 재학생 전원이 학년별 균형을 이루어 자발적으로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저학년 중심으로 편중된 행사 참여는 지양한다.
- 바. 군사학과의 날 행사 중 2부 행사(한마당 잔치)에 소요되는 경비는 가용 예산을 고려하여 학생자치회 회비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비의 일부는 군사학과에서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사. 군사학과의 날 행사 전 각종 사고 발생 위험(가능) 요인을 예측하여 사고 예방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모든 활동간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행사를 진행한다.
- 아. 군사학과의 날 2부 행사 종료 이후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개인 : 개별적·추가적인 모임 금지 ⇒ 최단시간 내 숙소 귀가 ⇒ 숙소에서 도착과 동시 해당 소대장 학생에게 도착 보고(통보)
 - 2) 소대장 학생 : 소대 학생 전원 귀가 여부 확인 ⇒ 중대장 학생에게 결과 보고
 - 3) 중대장 학생 : 중대 학생 전원 귀가 여부 확인 ⇒ 대대장 학생 및 해당 학년 지도교수에게 보고
 - 4) 대대장 학생 및 학년 지도교수 : 군사학과장에게 결과 보고(통보)

제44조 졸업식(학위수여식)

1. 단과대학별로 졸업식(학위수여식)을 시행할 경우, 학군교(학군단) 통제하 실시하는 임관식(수료식) 행사 일정을 고려하여, 단과대학 졸업식(학위 수여식) 행사에 이어 2월 하순 경에 실시한다.
2. 졸업식(학위수여식) 행사는 행사 실시 2주 전 군사학과장에게 행사 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3. 졸업식(학위수여식) 행사는 군사학과장 주관 하 교직원, 학생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며, 복장은 군사학과 교직원은 정장, 학생은 제복을 착용하고 기타 참석자는 자유복(단정한 복장)으로 한다.
4. 졸업식(학위수여식) 참석자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행사 복장,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숙지 등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한다.
 - 나. 졸업식(학위수여식) 행사 전·중·후 사회자 통제에 따라 행동한다.

제45조 입학식 및 승급식

1. 군사학과 학생에 대한 입학식 및 승급식 행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군사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자부심과 명예심을 고취하는데 있다.

2. 입학식 및 승급식 행사는 행사 실시 2주 전 군사학과장에게 행사 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3. 군사학과 학생에 대한 입학식 및 승급식 행사는 매년 1학기 개강일 기준 1주차 금요일에 실시한다. 단,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군사학과장 지시에 의거 일정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입학식 및 승급식 행사는 군사학과장 주관하 교직원, 학생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며, 복장은 군사학과 교직원은 정장, 재학생은 제복을 착용하고 신입생은 자유복(단정한 복장)으로 한다.
5. 승급식 행사간 학년장 수여 절차(방법)는 다음과 같다.
 - 가. 학생자치위원회 간부 학생(대대장, 부대대장, 대대 참모, 학년별 중대장·부중대장 학생) : 군사학과장 및 교수가 학년장 수여
 - 나. 기타 학생 : 학생 상호간 견장 수여

제46조 개강식 및 종강식

1. 군사학과의 개강식 및 종강식 행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군사학문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성공적인 군 생활을 위해 미래 지향적인 사고 견지 및 의식 형성, 학업 성취동기 부여 및 잠재역량 개발, 자부심 및 명예심 등을 함양시키는데 있다.
2. 개강식 및 종강식 행사는 행사 실시 2주 전 군사학과장에게 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3. 군사학과 개강식 행사는 매학기 시작 후 1주차 금요일에 실시 하고, 종강식 행사는 매학기 기말고사 실시 1~2주 전 금요일에 실시한다. 단,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군사학과장 통제(승인)에 의거 일정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개강식 및 종강식 행사는 군사학과장 주관하 교직원, 학생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며, 복장은 군사학과 교직원은 정장, 학생은 제복을 착용한다.
5. 개강식 및 종강식 행사 절차(방법)는 다음과 같다.
 - 가. 개강식 행사 : 매년 1학기 개강식 행사는 입학식 및 승급식 행사와 통합하여 실시하고, 2학기 개강식 행사는 독립적인 행사로 실시한다.
 - 나. 종강식 행사 : 매년 1학기 종강식 행사는 독립적인 행사로 실시하고, 2학기 종강식 행사는 새로 구성(선출)된 학생자치위원회 간부 학생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 및 학생자치위원회의 지휘권 교체 행사와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47조 CUMAS 행사

1. CUMAS 행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동기생 간 및 상·하급학생 간 친목 도모, 화합·단결을 통한 대학생활 조기 적응 및 대인관계 향상, 선진 시민의식 고취, 잠재역량 개발 및 함양에 있다.
2. CUMAS 행사는 학생 자치 행사의 일부로써 학생자치위원회 주관 하 전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매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단, 학사 일정 고려 일정을 조정하여 시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3. 학생자치위원회(대대장 학생)는 매년 2월 중에 연간 CUMAS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군사학과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정 또는 행사 내용을 변경(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단시간 내 변경(취소) 사유를 군사학과장에게 재보고 및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4. CUMAS 행사는 정과수업의 일부로 진행하는 행사이므로 반드시 해당과목 담당교수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모든 행사 전·중·후 제반 안전사고 예방에 최우선을 두고 실시한다.

제48조 군사학과 체육대회

1. 군사학과 체육대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동기생 간 및 상·하급학생 간 친목 도모, 화합·단결 및 대인관계 향상, 스포츠맨 습 함양, 운동 심판 및 지도 능력 구비, 강인한 체력을 증진시켜 나가는데 있다.
2. 군사학과 체육대회는 군사학과장 통제 하 군사학과 교직원 및 학생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학기별 1일 1회 실시하되, 가용예산을 고려하여 행사 범위를 축소하여 시행하거나 체육대회를 생략할 수 있다.
3. 군사학과 체육대회 행사 계획은 행사 실시 1개월 전 학생자치위원회(대대장 학생)에서 군사학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4. 군사학과 체육대회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전에 학생자치 위원회의 가용 예산 및 군사학과 지원 가능 예산을 고려하여 예산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5. 군사학과 체육대회는 정과수업의 일부로 진행하는 행사이므로 반드시 해당 과목 담당교수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모든 행사 전·중·후 제반 안전사고 예방에 최우선을 두고 실시한다.
6. 군사학과 체육대회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종목별 예선전은 CUMAS 행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제49조 학생자치위원회 지휘권 교체

1. 군사학과 학생자치위원회 지휘권 교체 행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새로 구성된 학생 자치위원회 간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생 자치 능력을 기르는데 있다.
2. 학생자치위원회 지휘권 교체 행사는 행사 실시 2주전 군사학과장에게 행사 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3. 학생자치위원회 지휘권 교체 행사는 매년 2학기 종강식 행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되, 학사 일정 및 학과 운용계획을 고려하여 군사학과장 지시에 의거 일정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학생자치위원회 지휘권 교체 행사는 군사학과장 주관 하 교직원 및 학생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다.
5. 학생자치위원회 지휘권 교체 행사에 참석하는 인원 중 교직원은 정장을 착용하고, 학생은 제복을 착용한다.
6. 학생자치위원회 지휘권 교체 행사 절차(방법)는 다음과 같다.

가. 신·구 학생자치위원회 간부 학생 단상 앞에 도열

※ 단상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좌측은 신(新) 자치위원회 간부 학생들 위치,
우측에는 현재 자치위원회 간부 학생들 위치

나. 군사학과장에게 지휘권 교체 신고

※ 지휘권 교체 전 지휘는 현재 자치위원회 대대장 학생이 실시,
지휘권 교체 완료 후 지휘는 신(新) 자치위원회 대대장 학생이 실시

다. 지휘권 교체 행사 관련 세부내용은 붙임#1을 참조한다.

7. 신·구 학생자치위원회 지휘권 교체 전 직책 수행 관련 모든 사항을 인계·인수
하여야 하며,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전·후임자간 직책별 인수·인계 사항

-
- 업무 참고철(업무편람) : 바인더
 - 직책수행 관련 모든 참고자료 (문서, 파일 등 포함)
-

나. 전·후임자간 직책별 인수·인계서(붙임#5 양식 참조)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매년 실시하는 2학기 중강식 행사 1~2주전 군사학과장에게 보고한다,

제50조 군사학과 M.T.

1. M.T.를 실시하는 목적은 군사학과 특성에 부합된 국가관·역사관 및 안보의식
고취, 교수－학생간 원활한 의사소통, 학생 상호간 친목 도모를 통한 화합·단결력
배양 및 올바른 가치관 정립, 지역 내 기관 및 사회단체의 공익사업과 연계된 봉사
활동 등을 병행하여 대학 홍보 효과 달성 기여, 명예심 및 건전한 시민의식을 고취
함으로써 함께 형 문화인재 육성 및 3C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다.
2. 군사학과의 M.T.는 학과장 통제 하 학생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진행한다.
3. 군사학과의 M.T.는 매년 1학기 초(3월~4주차)에 실시한다. 단, 대학의 학사 일정
및 학과 운용계획을 고려하여 군사학과장 승인 하에 일정을 조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4. 군사학과 학생자치위원회의 대표 학생(대대장)은 M.T. 실시 1개월 이전에 M.T.
계획을 군사학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군사학과 M.T.에 소요되는 예산은 학생자치위원회 예산으로 집행하며, 가용예산
을 고려하여 학과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다.
6. 군사학과 M.T. 행사 전·중·후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실시한다. 안전위해 요소
예측 또는 안전(군기)사고 발생 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사고 예방 및 발생한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를 완료한 다음, 군사학과장의 결정에 따라 M.T. 행사의 계속
진행 또는 중단(취소)할 수 있다.
7. 군사학과 M.T. 기간 중 교직원, 학생이 전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행사 참여
불가 사유(대학 규정에 명시된 출석 인정 사유 및 복수 전공 등 대학 수업에 한함.)
발생 시 사전에 해당 학년 지도교수 또는 군사학과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8. 군사학과 학생 전원이 참여하는 M.T. 활동간 건강을 해치거나 각종 사고 발생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과도한 음주 행위를 지양하고, 선·후배 및 동기생간 음주

강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따라서 음주 강요 행위 적발 시(신고, 목격 등) 음주 강요 학생은 제38조(상·벌점 제도), 제39조(상벌위원회), 제41조(징계)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9. 군사학과 학생자치위원회의 대표 학생(대대장)은 군사학과 M.T. 종료 후 2주 이내에 대학에서 실시하는 M.T.우수사례 공모전 응시(참여), 미담사례 발굴 홍보(대학 및 지역 신문 등), 예산 사용결과 보고(학과장) 및 공개(학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 군사학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상·벌 심의 위원회

구 분	위 원 장	위 원	
		교 수	학 생
대 상	군사학과장	교수 전원	자치위원회 간부학생 대표 1명
임무/기능	■ 상·벌적용 기준의 합리성(적정성) ■ 상·벌적용 대상자 확정, 징계, 후속조치 등		

2. 장학생 선발 심의 위원회

구 분	위 원 장	위 원
대 상	군사학과장	■ 학년별 지도교수(또는 지도교수 직무대리) ■ 행정 조교(필요시)
임무/기능	■ 대학 및 학과 장학생 선발 규정/방침 준수 장학생 선발	

3. 군사학과 운영 내규 심의 위원회

구 분	위 원 장	위 원	
		교 수	학 생
대 상	군사학과장	교수 전원	자치위원회 간부학생 전원
임무/기능	■ 군사학과 학사 및 생활규정(운영 내규) 개정 소요 판단, 후속 조치 ※ 학생들의 의견 수렴 ⇒ 개정안 준비/심의 ⇒ 확정 ⇒ 학과 홈페이지 게시 ■ 학생들에게 홍보/교육(학년별 지도교수, 간부 학생)		

4. 군사학과 교과(목) 편성 심의위원회

구 분	위 원 장	위 원			
		교 수	재 학 생	외부 전문가	기 타
대 상	군사학과장	전임교수	자치위원회 간부학생	타 대학교 교수 (학과장이 선발)	■ 학부모 ■ 산업체 대표 ■ 졸업생
임무/기능	■ 교과(목) 편성 / 교과 이수체계의 적절성 검증 등				

※ 교과목 개선 수요조사서(설문지) 활용 의견 수렴 가능

5. 군사학과 졸업사정 심의위원회

구 분	위 원 장	위 원	
		교 수	학 생
대 상	군사학과장	교수 전원	자치위원회 간부학생 (4학년)
임무/기능	■ 졸업 인증제 적용 기준에 의한 졸업 여부 심의		

부 칙

1. 본 규정은 " 군사학과 운영 내규 " 라고 칭한다.
2. (시행일) 본 규정은 대학 제규정 관리 규정(2023. 11. 24. 일부 개정)을 준수하여 대학 총장의 결재(승인)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군사학과 운영내규 중 제24조(졸업인증제) 제5항 “가” 호는 2027학년도 졸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4. 본 규정의 각 조항, 붙임물의 수정 또는 개정 시에는 군사학과 운영내규 심의위원회의 심의[개정안 심의 당시 심의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를 거쳐 군사학과장의 승인 (결재)을 득하여야 하며, 대학 제규정 관리 규정(2023. 11. 24. 일부 개정) 제10조(입안) 부터 제14조(효력)까지의 절차를 준수한다.

각종 행사간 신고 요령 [예]

1. 승 급

< 지휘 = 대대장 학생 >

부대 차-려!

학과장님께 대하여 경례!

학생들 전체 경례 확인 후 - [뒤로 돌아서] -

거수 경례 하면서 - 충성!

학과장 답례 후 바로

신고합니다!

군사학과 학생 3학년 000 학생 외 총 00명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각각 1개 학년씩 승급을 명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학과장님께 대하여 경례!

학생들 전체 경례 확인 후 - 뒤로 돌아서 - 거수 경례 하면서 충성!

학과장 답례 후 바로

< 배치도 >

[단 상]

교수 / 직원

군사학과장

< 태극기 >

< 학과기 >

[지휘자]

4학년	중 앙 통 로	3학년
2학년		1학년

< 학년장 수여 >

- ☞ 승급 신고 완료 후 학생자치위원회 간부 학생 들은 단상위로 올라와서 교수들에 의한 학년장 수여, 기타 학생은 본인의 좌석 좌·우측 학생 상호간에 학년장 수여

2. 지휘권 교체

<구(舊) 대대장 학생>

[신 · 구 학생자치위원회 간부 학생 전원 - 단상 앞으로 이동 통제 -
이동 완료 후]

부대 차-려 !

학과장님께 대하여 경례 !

학생자치위원회 간부 학생 전체 경례 확인 후 - [뒤로 돌아서] -

거수 경례 하면서 - 충성 !

학과장 답례 후 바로

< 구 대대장 학생 >

신고합니다 !

전임 학생자치위원회 간부 학생 대대장 000 외 00명은

신임 학생자치위원회 간부 학생 대대장 000 외 00명에게

0000년 00월 00일부로 학생자치위원회 지휘에 관한 건 일체를 이상 없이
인계하였습니다.

< 신임 대대장 학생 >

신임 학생자치위원회 간부 학생 대대장 000 외 00명은

전임 학생자치위원회 간부 학생 대대장 000 외 00명으로부터

0000년 00월 00일부로 학생자치위원회 지휘에 관한 건 일체를 이상 없이
인수하였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신임 대대장 학생>

학과장님께 대하여 경례 !

학생자치위원회 간부 학생 전체 경례 확인 후 - [뒤로 돌아서] -

거수 경례 하면서 - 충성 !

학과장 답례 후 바로 - 위치로 통제(지시) - 정위치에 착석

<이임사 및 취임사>

☞ 지휘권 교체 신고에 이어서

사회자 통제에 의거

신 · 구 대대장 학생은 단상으로 올라와서

이임사 및 취임사 발표

< 배치도 >

[단 상]

교수 / 직원

군사학과장

< 태극기 >

< 학과기 >

[신(新) 자치위원회 간부 학생]	중 앙 통 로	[구(舊) 자치위원회 간부 학생]
대대장 학생		대대장 학생
기타 간부 학생		기타 간부 학생

[지휘자 (신임 부대대장 학생)]

(중앙에 위치하여 있다가 교체신고 대상 인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앞으로 나올 때 좌측으로 위치 이동 후 대기, 교체 신고 완료 후 원위치)

4학년	중 앙 통 로	3학년
2학년		1학년

< 신 · 구 대대장 학생의 이임사 및 취임사시 지휘 요령 >

이임사	취임사
[지휘자]	[지휘자]
①전체 일어서 ②부대 - 차려 ③이임 대대장 학생에 대한 경례 ④단체 경례 확인 후 뒤로 돌아서 단독 경례 - 충성! - 이임사 ⑤이임 대대장 학생 지시에 의거 전체 학생에 대한 쉬어 또는 착석 통제 ⑥본인 자리에 가서 착석 ⑦이임사 종료 후, 자리에서 일어나서 전체 일어서, 부대 차려 ⑧단독 경례, 충성! - 이임사. 끝.	①부대 - 차려 ②단독 경례, 충성! - 취임사 ③취임 대대장 학생 지시에 의거 전체 학생에 대한 쉬어 또는 착석 통제 ④본인 자리에 가서 착석 ⑤취임사 종료 후, 자리에서 일어나서 전체 일어서, 부대 차려 ⑥취임 대대장 학생에 대한 경례 ⑦단체 경례 확인 후 뒤로 돌아서 단독 경례 - 충성! - 취임사. 끝.

졸업인증제 적용 요건

1. 영어 및 제2외국어

구 분	영 어	제 2 외국어
분 야	① TOEIC : 700점 이상 ② TEPS : 64점 이상 ③ TOEFL : IBT 70 이상 ④ SEPT : 6단계 이상	① 일본어 - JPT : C 레벨 이상 - JLPT : N4 이상 ② 중국어 : 3 ~ 4급 이상 ③ 프랑스어 : B1 이상 ④ 러시아어 : 1단계 이상 ⑤ 독일어 : B1 이상 ⑥ 스페인어 : B1 이상
달성 조건	1개 분야 이상, 해당분야별 국가공인자격 취득	

2. 무 도

해당 종목	태권도, 유도, 검도
달성 조건	1개 분야 1단 이상, 해당 협회에서 발행한 공인된 자격증 취득

3. 정보화 및 기타 분야 자격증

해당 종목	PCT, 컴퓨터 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과 같이 컴퓨터를 활용하여 전산 실무를 할 수 있는 능력 구비
달성 조건	1. 정보화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 대한상공회의소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상공회의소 IT+ 레벨 1~5급 • 한국창의인성교육연구원 : e-Test Professionals 1~4급 • 한국생산성본부 : GTQ(그래픽기술자격) 1·2급, IEQ • PC활용능력평가시험 A·B급 : 주) 피씨티 • 한국정보평가협회 : PC마스터(정비사)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디지털정보활용능력 초~고급 - 인터넷정보관리사 전문가, 1~2급 • 한국생산성본부 : 정보기술자격(ITQ)시험 A~C급 2. 기 타 • 전문상담교사 1·2급 : 교육부장관 인정 교육기관 • 청소년 상담사/지도사 1~3급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국사편찬위원회 • KBS한국어능력시험 1~4+급 : KBS한국방송공사 • 무역영어 1~3급 :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영어검정 1~준3급 : (사)한국평생교육평가원 • 드론 등 국가인정 공인자격증 등

4. 체 력

해당 종목	오래달리기(3Km),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달성 조건	오래달리기(3Km),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3개 종목 * 3개 전 종목 1급 이상시 합격(육군 체력검정 기준표 적용)

()년 군사학과 학생 졸업 인증 및 졸업자격 심의(서)

구 분	소 속	학 년	학 번	이 름
인 적 사 항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군사학과	4학년		
전 공 여 부	단일 전공 (), 복수 전공 (), 연계 (), 부전공 ()			

□ 장교 역량

구 분	구 정 (기 준 / 수 준)	달 성 수 준	판 정	비 고
장교 임관 희망자	체 력	전 종목(3개) 1급 이상		▶ 군사학과 졸업인증제 적용 요건(붙임#2) 해당 분야별 합·불제 적용 ▶ 제24조(졸업 인증제) 제5항 “가” 호 적용
	무 도	3개 종목 중 1개 종목 1단 이상		
	어 학	영어 또는 제2외국어 중 1개 분야 이상 자격 취득		
	정보화 /기타	요구 조건 중 1개 분야 1개 이상 자격 취득		
장교 임관 불(不) 희망자	졸 업 시 험	전공 필수 3개 과목 (무기체계론, 군대윤리, 한국군 리더십)별 70/100 이상		

□ 장교 자질

주요 내용	규 정 (기준 / 수준)	결 과	판 정	비 고
인성 / 품성	4년간, 누적 벌점 40점 이상			▶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 취소 사유 해당 ▶ 법률과 규정 위반 행위로 인한 처벌사유 해당 등
	4년간, 군사학과장 경고장 3회 이상			
※ 장교로 임관하였을 경우 조선대학교 및 군(軍)의 명예를 실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성(품성) 저열자				

□ 종합 평가

구 분	장교 역량	장교 자질	종합 판정
판 정			

□ 총 평

심 의 관	의 견 기 술	서명 또는 인
군 사 학 과 장		
교수		
교수		
교수		

확 인 관 :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군사학과장 0 0 0 교수 (인)

군사학과 장학생 선발 방침 / 절차

[매 학기별 대학 장학생 선발방침(지침)에 의거 일부 변경 가능]

1. 백악 성적 장학금(90%)

가. 대학 선발지침

- 1) 학년별 석차 50% 이내 성적순으로 선발
- 2) 토익 점수 반영(진급학년 기준)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토익 성적	시험 응시여부	400점 이상	500점 이상	600점 이상

나. 학과 선발지침

- 1) 학과는 대학 장학생 선발지침에 추가하여
- 2) 외국어 성적 기준 충족 미달 시 등급 및 순위 조정
※외국어 성적 충족 시 1순위, 1순위 미달 시 2순위, 2순위 미달 시 3순위
순으로 장학금 지급 등급 및 순위 조정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조건	성적 기준 충족 + 토익 성적 기준 충족 者	성적 기준 충족 + 토익 성적 기준 미달 者	성적 기준 충족 + 토익시험 미응시 者

- 3) 군 가산복무 지원금 수혜 여부를 고려하여, 등급을 차등 적용한다.

구 분		군사학과 장학생 선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수혜 者	1등 : 3종, 2등 : 4종, 3등 이하 : 5종
	비수혜 者	1등 : 2종, 2 ~ 4등 : 3종, 5 ~ 10등 : 4종, 11등 ~ 학년 석차 50% 이내 : 5종

- 4) 장학금의 잔액이 발생할 경우, 군 가산복무 지원금 비수혜자와 성적을 고려하여 우선 지급한다.

2. 백악 면학 장학금(10%)

가. 대학 선발지침

- 1) 지급 대상 : 학생회 활동 및 각종 전국규모 경시대회(공모전, 학술대회 등)
수상으로 면학분위기 조성 및 단과대학 특성화에 기여한 재학생
- 2) 선발 기준 : 직전 학기 평점 평균 2.0 이상

나. 학과 선발지침

- 1) 학과는 대학 장학생 선발지침에 추가하여,
- 2) 면학장학금은 5종을 원칙으로 한다.

3) 백악 성적장학금과 백악 면학장학금은 중복 지급이 불가하므로 백악장학금 (성적장학금 또는 면학장학금) 중 더 높게 산출된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4) 지급 대상 / 우선순위

면학분위기 조성 者 (장학금 지급 우선순위)	① 대대장 학생(상위 등급) ② 부대대장 학생 ③ 대대참모 학생(인사, 정보작전, 군수, 정훈공보) ④ 중대장 학생(남, 여) ⑤ 입시홍보팀 순
-----------------------------	--

5) 면학분위기 조성 者는 면학장학금 배정액(전체 장학금의 10% 이내)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별로 지급하되, 대상자 과다로 면학장학금 배정을 초과할 경우에는 면학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학생자치위원회 간부학생 인수·인계서

1. 인계·인수 근거 / 일자 :
(법령·조직개편·사무 분장 조정·인사명령 근거 / 일자)
2. 해당 직책 (직책명 명시)
3. 인계·인수 사항
 - 가. 소관업무 현황
 - 1) 담당 업무
 - 2)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 3) 현안 사항 및 문제점
 - 4) 주요 미결사항
 - 나. 관련문서 현황
 - 다. 주요 물 / 예산 등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참고사항 (필요시, 현황, 데이터 등 붙임물 첨부)

위와 같이 인계·인수 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직위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수자	직위 ;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위 ; 군사학과장	성명	(서명 또는 인)

학과 지정 우선 수강과목(선수 과목) 목록

(2026학년도 교과목 편성표 기준)

- ① 하계 병영체험훈련 1·2
- ② 동계 병영체험훈련
- ③ 체력단련 1 ~ 5, 7 ~ 8
- ④ 지휘훈육 1 ~ 5, 7 ~ 8
- ⑤ 군사행정실무 1
- ⑥ 참모학
- ⑦ 전술학
- ⑧ 군사상담학

※ 매년 교과목 편성(안) 작성시 조정 가능

해외 여행계획서

학 년	학 번	성 명	연 락 처 (H/P)	
			본 인	긴 급 (동행자)

□ 여행 개요

여행 목적	
여행 기간	
여행 국가	
여행경비 내역	
여행 방법	
여행 후 얻게 될 효과	

□ 여행 세부계획

월 /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 장소 명	주요 내용

□ 기타 참고사항

1. 국가(외교부) 통제 여행금지 대상 국가 / 지역 해당 여부 :
2. 안전 관련사항 : 주 (OO) 대한민국 대사관(또는 영사관) 전화번호 :

20 . . .

작 성 자 : 성 명

(서명 또는 인)

진술서(경위서)

1. 인적 사항

소속		학년		학번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현 거주지					

2. 위반 경위

가. 일정(기간, 일시) :

나. 장소 (생략 가능) :

다. 위반 내용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록):

상기명 본인은<위반사항에 대해 우선순위별 순서 준수 기록>

-
-
-
-
-
-
-
-

위 위반 내용에 대해 사실대로 기록하였으며, 위반한 사실에 대해
군사학과 운영내규 제 7장(포상 및 징계)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작성 자 : 성명

(서명 또는 인)